

제331회 국회  
(임시회)

# 국회 본회의 회의 의록

제 8 호

국회 사무처

2015년3월3일(화) 오후 3시

## 의사일정

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경숙) 선출안
2. 특별감찰관 후보자(이광수) 추천안
3. 특별감찰관 후보자(이석수) 추천안
4. 특별감찰관 후보자(임수빈) 추천안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8.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9. 향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
24.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5.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26.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9.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0.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향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2.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33.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4.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5.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6.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7. 삼척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9.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42. 생활체육진흥법안
4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4.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4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6.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7.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4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0.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1.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5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5. 대학도서관진흥법안
5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5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8.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0.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
6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6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4. 대한민국과 태국 간의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
65.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범죄인 인도에 관한 조약 비준동의안
66.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67.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68. 북태평양 공해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69.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문화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70. 201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72.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3.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9.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의된 안건

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경숙) 선출안(의장 제의) ..... 6
2. 특별감찰관 후보자(이광수) 추천안(의장 제의) ..... 6
3. 특별감찰관 후보자(이석수) 추천안(의장 제의) ..... 6
4. 특별감찰관 후보자(임수빈) 추천안(의장 제의) ..... 6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 7
6.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동 의원 대표발의)(박대동·정희수·김을동·이재영·정갑윤·박민수·주영순·윤명희·  
이만우·강길부·민현주 의원 발의) ..... 7
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성린 의원 대표발의)(나성린·주영순·이현재·강석훈·정문현·  
박덕흠·류성걸·박명재·유일호·이만우·김광림 의원 발의) ..... 8
8.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박홍근·이찬열·  
강기정·부좌현·윤관석·주승용·김광진·박남춘·윤호중 의원 발의) ..... 8
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동완·  
김을동·李宰榮·정희수·문정림·강석호·조명철·이완구·이노근 의원 발의) ..... 9
10.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광진·김을동·정희수·강기윤·  
박인숙·이상일·조현룡·이재영·문정림 의원 발의) ..... 9
1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최봉홍·주영순·서용교·  
권성동·김상민·김기선·김용태·김무성·이종훈 의원 발의) ..... 9
12.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10
13.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0
14.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신정훈·최규성·김춘진·조정식·  
김영록·부좌현·이윤석·조경태·김성곤·이석현·김승남 의원 발의) ..... 10
1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홍문표·김우남·박범계·배재정·김윤덕·김경협·이찬열·김영록·최규성  
의원 발의) ..... 10
16.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
17.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1
18.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김성태·윤명희·  
손인춘·박덕흠·윤재옥·김정록·강은희·김진태·유승우·김우남 의원 발의) ..... 11
19. 향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2
20.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2
2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정갑윤·전하진·권은희·  
이노근·나성린·이학재·김진태·황영철·서상기 의원 발의) ..... 12
22.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2
23.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배기운 의원 대표발의)(배기운·김광진·김영록·김윤덕·김동철·박홍근·  
조정식·이학영·강기정·장병완·이종걸 의원 발의) ..... 12
24.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배기운 의원 대표발의)(배기운·김광진·김영록·김윤덕·  
김동철·박홍근·조정식·이학영·강기정·장병완·이종걸 의원 발의) ..... 12
25.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안효대·이노근·이명수·염동열·박상은·이철우·  
이장우·이상일·정수성·윤영석 의원 발의) ..... 12
26.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4

2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김영록 · 강기정 · 김동철 · 김성곤 · 김우남 · 김춘진 · 박주선 · 박지원 · 박홍근 · 안규백 · 유성엽 · 이윤석 · 이종걸 · 장병완 · 주승용 · 최규성 · 황주홍 의원 발의) .....	14
28.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 · 박민수 · 윤관석 · 김우남 · 김영록 · 이윤석 · 이낙연 · 김성곤 · 김승남 · 박지원 의원 발의) .....	14
29.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안효대 · 이노근 · 이명수 · 염동열 · 이철우 · 박상은 · 조해진 · 신의진 · 안덕수 · 신경림 의원 발의) .....	14
30.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안효대 · 이노근 · 이명수 · 염동열 · 조현룡 · 이자스민 · 심윤조 · 김태원 · 이장우 · 이상일 의원 발의) .....	14
31.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배기운 의원 대표발의)(배기운 · 김광진 · 김영록 · 김윤덕 · 김동철 · 박홍근 · 조정식 · 이학영 · 강기정 · 장병완 · 이종걸 의원 발의) .....	14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	16
7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정부위원장 제출) .....	16
72.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19
32.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손인춘 의원 대표발의)(손인춘 · 김상민 · 문대성 · 정희수 · 함진규 · 김을동 · 이자스민 · 윤명희 · 황인자 · 이진복 의원 발의) .....	20
33.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손인춘 의원 대표발의)(손인춘 · 정희수 · 김종태 · 윤명희 · 안규백 · 송영근 · 이강후 · 이진복 · 장윤석 · 황인자 의원 발의) .....	20
34.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20
35.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20
36.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근 의원 대표발의)(송영근 · 류지영 · 정희수 · 주호영 · 조명철 · 김성찬 · 권성동 · 김상훈 · 강은희 · 정갑윤 의원 발의) .....	21
37.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2
3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2
39.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2
4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22
4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 · 서상기 · 박주선 · 이찬열 · 조정식 · 이개호 · 정진후 · 김태년 · 박홍근 · 설훈 · 박대출 · 서용교 · 윤재옥 · 안홍준 · 강은희 · 염동열 · 유은혜 · 윤관석 · 배재정 · 박혜자 · 유인태 · 유기홍 · 도중환 의원 발의) .....	23
42.	생활체육진흥법안(김장실 의원 대표발의)(김장실 · 서용교 · 유기준 · 김세연 · 유재중 · 나성린 · 홍문표 · 이현승 · 이진복 · 정의화 · 김태흠 · 김성찬 · 서병수 · 이완영 · 정희수 · 김진태 · 김무성 · 김미희 · 이우현 · 윤영석 · 이완구 · 김동철 · 박인숙 · 이주영 · 서상기 · 정문헌 · 김도읍 · 박대출 · 김광립 · 오제세 · 조현룡 · 김우남 · 김성태 · 김춘진 · 조원진 · 김민기 · 강석훈 · 박성호 · 김한표 · 김태원 · 이상민 · 김영우 · 길정우 · 홍일표 · 김재운 · 서용교 · 백재현 · 노철래 · 김희국 · 함진규 · 박덕흠 · 신성범 · 이이재 · 김상훈 · 권은희 · 이학재 · 우원식 · 이현재 · 임내현 · 강동원 · 한기호 · 김태년 · 원혜영 · 남경필 · 박영선 · 강창일 · 강길부 · 이윤석 · 박대동 · 홍영표 · 김승남 · 이낙연 · 김관영 · 김태호 · 박남춘 · 박주선 · 전정희 · 조해진 · 김영록 · 손인춘 · 박성효 · 신의진 · 안덕수 · 류지영 · 안홍준 · 유정복 · 진영 · 박창식 · 김재경 · 황진하 · 강은희 · 박명재 · 윤재옥 · 안민석 · 홍지만 · 신경림 · 이한성 · 최재성 · 한명숙 · 윤호중 · 김광진 · 이상직 · 윤후덕 · 이원욱 · 황주홍 · 심재권 · 최원식 · 임수경 · 민홍철 · 정청래 · 강기정 · 안규백 · 유승민 · 김정록 · 정우택 · 윤상현 의원 발의) .....	23
4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 · 배재정 · 배기운 · 진선미 · 손인춘 · 정진후 · 김상희 · 유은혜 · 김태년 · 도중환 · 박홍근 · 박남춘 · 정성호 · 김광진 · 윤관석 의원 발의) .....	23

44.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조해진 · 조현룡 · 문대성 · 홍지만 · 김희정 · 남경필 · 이재영 · 金永柱 · 이우현 · 박상은 · 김한표 의원 발의) .....	24
4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24
46.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24
5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25
58.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 발의)(정갑윤 · 김태원 · 박인숙 · 박기춘 · 이에리사 · 우원식 · 김태년 · 김기현 · 안효대 · 박대동 · 강길부 · 이채익 · 서상기 의원 발의) .....	25
5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 · 안규백 · 김승남 · 신경민 · 도종환 · 김을동 · 박홍근 · 김태년 · 이인영 · 이우현 의원 발의) .....	25
60.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25
6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최민희 · 윤호중 · 이원욱 · 배재정 · 서영교 · 유은혜 · 남인순 · 김상희 · 신학용 · 백재현 · 문병호 · 전순옥 · 윤관석 · 정성호 · 박남춘 의원 발의) .....	25
62.	전과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 · 최민희 · 강기정 · 원혜영 · 전병헌 · 강창일 · 배재정 · 임내현 · 이개호 · 김동철 의원 발의) .....	25
6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전병헌 · 진성준 · 배기운 · 이종걸 · 부좌현 · 이만우 · 박주선 · 신경민 · 김우남 · 윤호중 · 정성호 · 박민수 · 최동익 · 유승희 의원 발의) .....	25
47.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27
4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27
4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27
50.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27
51.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27
5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31
53.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박성호 · 정희수 · 이만우 · 유승우 · 이한성 · 장운석 · 정문헌 · 강기운 · 김성찬 · 김태원 의원 발의) .....	31
5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군현 의원 대표발의)(이군현 · 김세연 · 김용태 · 김태원 · 김태흠 · 민병주 · 박성호 · 박민식 · 박인숙 · 신성범 · 여상규 · 유일호 · 유재중 · 한선교 의원 발의) .....	31
55.	대학도서관진흥법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 · 윤관석 · 서용교 · 유승우 · 박성호 · 이낙연 · 김우남 · 민병주 · 문대성 · 강은희 · 최봉홍 · 하태경 · 이철우 · 정진후 · 서상기 의원 발의) .....	31
5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 · 이낙연 · 박성호 · 박창식 · 김상훈 · 강은희 · 김상민 · 조원진 · 송영근 · 김장실 · 정갑윤 · 윤관석 의원 발의) .....	31
64.	대한민국과 태국 간의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 .....	32
65.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범죄인 인도에 관한 조약 비준동의안 .....	32
66.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32
67.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32
68.	북태평양 공해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	32
69.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문화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32
70.	201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33
73.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김한표 · 황인자 · 박윤옥 · 이종진 · 김명연 · 이채익 · 문정림 · 윤명희 · 이종배 의원 발의) .....	34
7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34

7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34
7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34
7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34
7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37
79.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김희정 · 서병수 · 주호영 · 김태원 · 김무성 · 이학재 · 권은희 · 김장실 · 이군현 · 서용교 · 문정림 · 강은희 · 서상기 의원 발의) .....	37
o 5분자유발언 .....	37
o 의사진행의 건 .....	39

(16시01분 개의)

○의장 정의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국장 장대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에 박민식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양창영 의원 대표발의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 의원 대표발의로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호 의원 대표발의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진 의원 대표발의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9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경숙) 선출안(의장 제의)
2. 특별감찰관 후보자(이광수) 추천안(의장 제의)
3. 특별감찰관 후보자(이석수) 추천안(의장 제의)
4. 특별감찰관 후보자(임수빈) 추천안(의장 제의)

(16시03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경숙) 선출안, 의사일정 제2항 특별감찰관 후보자(이광수) 추천안, 의사일정 제3항 특별감찰관 후보자(이석수) 추천안, 의사일정 제4항 특별감찰관 후보자(임수빈) 추천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 중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국회에서 선출한 국가인권위 위원 중에서 장명숙 위원의 임기가 2015년 3월 7일자로 만료됨에 따

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새로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안 3건은 특별감찰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특별감찰관 후보자 3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기 위한 것으로서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제의하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추천 대상자의 재산 및 병역 신고사항은 국회공보에 게재되었으며 의석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 4건의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른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합의에 따라 연기식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윤영석 의원, 이현승 의원, 박범계 의원, 진성준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는 다음 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국장 장대섭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광판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셔서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4개의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시작 버튼을 누르신 후 해당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가’를, 반대하시는 분은 ‘부’를, 기권하시는 분은 ‘기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하시고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 투입 버튼을 누르시면 투표는 종료될 것입니다.

투표용지 투입 버튼까지 누르신 후 기표소에서

나오셔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전광판에 표출되는 순서에 따라 맨 뒷 줄부터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6시06분 투표개시)

○의장 정의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6시30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은 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경숙) 선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8표 중 가 156표, 부 72표, 기권 10표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경숙)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감찰관 후보자(이광수) 추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8표 중 가 204표, 부 26표, 기권 8표로서 특별감찰관 후보자(이광수) 추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감찰관 후보자(이석수) 추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8표 중 가 216표, 부 17표, 기권 5표로서 특별감찰관 후보자(이석수) 추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감찰관 후보자(임수빈) 추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8표 중 가 208표, 부 24표, 기권 6표로서 특별감찰관 후보자(임수빈) 추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16시33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5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임내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임내현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광주 북구를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입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류지영 의원과 박성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정시설의 신입자에게 교정시설의 장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를 부여하고 석방되는 수용자가 영치품을 한꺼번에 찾아가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교정시설에 영치품의 보관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그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영치품의 귀속에 관하여 유류금품의 귀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등의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임내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3인 중 찬성 223인으로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동 의원 대표발의)(박대동·정희수·김을동·이재영·정갑윤·박민수·주영순·윤명희·이만우·강길부·민현주 의원 발의)

(16시36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6항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박대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장대리 박대동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 북구 출신 새누리당 정무위원회의 박대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정책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대상기관 등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자료제공 요청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를 한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박대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32인 중 찬성 230인, 기권 2인으로서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성린 의원 대표발의)(나성린·주영순·이현재·강석훈·정문헌·박덕흠·류성걸·박명재·유일호·이만우·김광림 의원 발의)

(16시39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7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나성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장대리 나성린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부산진구갑 출신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말정산에 따라 10만 원을 초과하는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금년도의 경우에는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3월에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부칙을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나성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32인 중 찬성 222인, 기권 10인으로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박홍근·이찬열·강기정·부좌현·윤관석·주승용·김광진·박남춘·윤호중 의원 발의)

(16시41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8항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의 임수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위원장대리 임수경 존경하는 국회의



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개정안은 불법행위로 적발된 업소들이 지역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하여 허가받는 등의 불법 변칙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허가 지방자치단체와 단속 주체인 경찰청이 해당 풍속업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문 간 중복적인 내용을 일부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임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8인, 기권 2인으로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동완·김을동·李宰榮·정희수·문정림·강석호·조명철·이완구·이노근 의원 발의)

**10.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광진·김을동·정희수·강기윤·박인숙·이상일·조현룡·이재영·문정림 의원 발의)

**1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최봉홍·주영순·서용교·권성동·김상민·김기선·김용태·김무성·이중훈 의원 발의)

(16시43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9항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김용남 의원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장대리 김용남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원 출신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시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맞춤형 고용서비스 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위한 통합정보전산망을 구축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김용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5인, 기권 1인으로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29인, 기권 2인으로서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5인, 기권 2인으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12.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16시47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2항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박윤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위원장대리 박윤옥 새누리당 비례대표 박윤옥 의원입니다.

오늘 어느 기자분이 저한테 왜 한복을 입었냐고 그래서요 한복 입기 캠페인도 있고 개인적으로 한복을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서 한복을 아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박윤옥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자스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으로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가 폐지된 것에 맞추어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가족친화인증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되고 있는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선도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가족친화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박윤옥 의원님은 한복이 특별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투표를 마쳤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1인, 기권 3인으로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13.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4.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신정훈·최규성·김춘진·조정식·김영록·부좌현·이윤석·조경태·김성곤·이석현·김승남 의원 발의)

1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홍문표·김우남·박범계·배재정·김윤덕·김경협·이찬열·김영록·최규성 의원 발의)

## 16.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7.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18.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김성태·윤명희·손인춘·박덕흠·윤재옥·김정록·강은희·김진태·유승우·김우남 의원 발의)**

(16시50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3항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4항 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윤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6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農林畜産食品海洋水産委員長代理 尹明熙**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식품 관련 시장 및 제도 등에 대한 전문적 분석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명인으로부터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등의 기능을 전수받는 자에게도 명인의 양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성년후견인 등 행위능력 결격사유를 이유로 말조련사나 재활승마지도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그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여 과도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의 근간이 되는 흙의 소중함과 보전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합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3월 11일을 ‘흙의 날’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촌진흥청장이 지식재산권을 수출하는 자에게도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보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지식재산권 기술료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지의 특성에 관한 평가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 토석채취 관련업의 안전사고 발생 및 산림 훼손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업장의 안전 확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산림문화, 휴양, 산림교육, 보건 등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이용객의 장단기 체류를 위한 시설 조성을 통해 산림을 기반으로 한 생애주기 산림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윤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이제 법사 위원님들이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9인, 기권 1인으로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전해철 의원님, 투표하시지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6인 중 찬성 223인, 기권 3인으로서 말  
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7인 중 찬성 221인, 기권 6인으로서 친  
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32인 중 찬성 230인, 기권 2인으로서 농  
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  
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31인 중 찬성 230인, 기권 1인으로서 산  
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  
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  
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40인 중 찬성 232인, 기권 8인으로서 산  
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농  
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0.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원장 제출)**

**2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정갑윤·전하진·권은  
희·이노근·나성린·이학재·김진태·황  
영철·서상기 의원 발의)**

**22.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23.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배기운 의원 대표  
발의)(배기운·김광진·김영록·김윤덕·김  
동철·박홍근·조정식·이학영·강기정·  
장병완·이종걸 의원 발의)**

**24.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배  
기운 의원 대표발의)(배기운·김광진·김영  
록·김윤덕·김동철·박홍근·조정식·이  
학영·강기정·장병완·이종걸 의원 발의)**

**25.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  
발의)(안효대·이노근·이명수·염동열·박  
상은·이철우·이장우·이상일·정수성·  
윤영석 의원 발의)**

(16시59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9항 항만법 일부개  
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0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  
일정 제21항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사일정 제22항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3항 선박법 일부개정법률  
안, 의사일정 제24항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도선법 일부개정법

를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안효대 의원님 나오셔서 이상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대리 안효대**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울산 동구 출신의 안효대 국회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행위제한 의무 지역·지구 등에서의 허가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범정형을 통일하고 항만 및 주변지역의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항만 사업자는 저탄소 항만의 유지·관리를 위해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 감소에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무단점유된 국유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지목을 현실화하고 해당 국유림을 공유림 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부 등의 취소나 원상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의 경우 청문을 실시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다음, 강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등에서 어업을 한 자, 비어업인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둘 이상의 시·군·구에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 걸쳐 있는 경우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하여 하나의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어촌신용조합의 설립근거를 삭제하지 않고 현행과 같이 유지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배기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 원 기준을 적용하여 벌금형 편차를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안효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8인 중 찬성 228인으로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5인 중 찬성 217인, 기권 8인으로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32인 중 찬성 232인으로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28인, 기권 3인으로서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30인, 기권 4인으로서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30인, 기권 2인으로서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33인, 기권 1인으로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김영록 · 강기정 · 김동철 · 김성곤 · 김우남 · 김춘진 · 박주선 · 박지원 · 박홍근 · 안규백 · 유성엽 · 이윤석 ·

이종걸 · 장병완 · 주승용 · 최규성 · 황주홍 의원 발의)

**28.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 · 박민수 · 윤관석 · 김우남 · 김영록 · 이윤석 · 이낙연 · 김성곤 · 김승남 · 박지원 의원 발의)

**29.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안효대 · 이노근 · 이명수 · 염동열 · 이철우 · 박상은 · 조해진 · 신의진 · 안덕수 · 신경림 의원 발의)

**30.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안효대 · 이노근 · 이명수 · 염동열 · 조현룡 · 이자스민 · 심윤조 · 김태원 · 이장우 · 이상일 의원 발의)

**31.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배기운 의원 대표발의)(배기운 · 김광진 · 김영록 · 김윤덕 · 김동철 · 박홍근 · 조정식 · 이학영 · 강기정 · 장병완 · 이종걸 의원 발의)

(17시09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26항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7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29항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1항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신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대리 신정훈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남 나주 · 화순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적취득을 조건으로 입차한 외국선박을 외항운송사업자가 운항하는 경우 등록하도록 하였고 단체협약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의 선내 게시 의무를 폐지하는 한편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소유자 등이 부

당하게 지급받은 손실보상금 등을 환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식이 제한 금지되거나 이식 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수산질병관리사가 직접 진단하지 아니한 수산생물에 대하여 수산생물용 의약품을 처방 투약할 수 없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수산물 유통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안전한 수산물 유통 체계 확립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되 수산물산지유통관장의 개설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수협과 생산자단체 등으로 변경하고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및 소비자 분산물류센터에 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삭제하여 다양한 주체가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효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배기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 원 기준을 적용하여 벌금형 편차를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 존함)

○의장 정의화 신정훈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0인 중 찬성 215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곧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9인 중 찬성 217인, 기권 2인으로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4인 중 찬성 223인, 기권 1인으로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9인 중 찬성 228인, 기권 1인으로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6인 중 찬성 222인, 기권 4인으로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

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31인 중 찬성 230인, 기권 1인으로서 향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17시18분)

○의장 정의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의 협의를 거쳐서 오늘 의사일정에 제71항부터 제79항까지 모두 9건의 안건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한 안건 중에 의사일정 제71항과 제72항을 먼저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정무위원장 제출)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71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장대리 김기식 정무위원회의 야당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입니다.

드디어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에 관한 법률안을 본회의에 회부해서 표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저를 포함해서 김영주 의원, 이상민 의원을 포함해서 대표발의된 법안과 정부가 제출한 4개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해서 정무위원회에서 통과하고 온 것을 법사위에서 수정한 법안입니다.

제가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 이후에 참여연대 차원에서 부패방지법을 입법청원한 후 20년 동안 반부패 관련 입법에 관여를 해 왔습니다만 이 법안은 전 세계 유례가 없는 포괄적 입법임은 분명합니다.

대상자에 있어서 고위공직자, 공무원, 민간인을 포함하고 있어서 대상에 있어서 포괄적이고, 부정청탁·금품수수·이해상충이라고 하는 세 가지

다른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에서 입법례가 없는 포괄적 입법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2013년도 정부안이 제출되어서 그 법안을 제가 1조부터 마지막 조문까지 조문별로 봤을 때 정말 이 법안이 전직 대법관 출신의 권익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제출한 법안이나라고 제가 스스로 의문을 가질 만큼 이 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부정청탁에 관련돼서 규정하기를 ‘법령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공정한 업무를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소위 애매하고 이 포괄적인 규정이 국민의 청원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금품수수와 관련하여서 본인은 물론 일 뿐만 아니라 가족의 금품수수와 관련하여서도 아무런 직무관련성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형사법에 있어서의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라는 지적이 나왔고, 이해상충 부분은 앞의 금품수수나 부정청탁처럼 구체적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도 사촌 이내 범주의 친·인척이 자기 직무와 관계가 있는 유관기관에 있다는 것만으로 제척·회피를 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들이 저희 정무위원회 심사하는 과정에서 누차 지적되었고 여러 가지 입법적 대안을 고민해 봤습니다만 여야 정치 지도부가,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법의 원안 포괄입법을 주장했고 또 국민들께서 지지하셨기 때문에 그 포괄입법의 형태에서 가장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고 없애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 정무위원회에서는 부정청탁을 열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체화하고 일곱 가지의 예외조항을 둬으로써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청원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위헌 소지를 제거했고, 금품수수와 관련해서 공직자의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가족의 금품수수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소위 위헌 소지를 제거했습니다.

다만 이해상충과 관련하여서는 사촌 이내의 범주까지 하기 때문에 그 적용 대상이 최소 2500만 명에서 3000만 명에 이르는 이러한 엄청난 적용 범위하에서 위헌 소지를 제거할 방법을 현재 찾지 못해서 그 부분을 유보하고 금품수수와 부정청탁으로 한정해서 입법안을 만들었다는 점을 말



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무위의 통과안을 어제 법사위와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서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정무위원회에서 통과한 안을 기본적으로 보완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법은 매우 충격적인 법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사회에 있어서 오랜 접대·로비 문화를 고려한다면, 오랜 관행을 고려한다면 이 법이 줄 사회적 충격은 매우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2004년도 우리가 정치관계법을 개정하면서 국회의원의 주례를 금지하고 일체의 금품제공을 금지하고 경조사를 금지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국회의원의 주례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 정치관계법의 개정이 우리 선거문화를 바꾸고 돈 안 드는 정치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김영란법이 우리나라의 20년 된 반부패 입법 과정에서 매우 획기적인 조치이고 충격은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지난 2004년도 정치관계법처럼 우리의 오랜 잘못된 로비·접대 문화를 근절하고 보다 투명하고 맑은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의 내용은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 모두가 함께 만든 법입니다. 사실 세칭으로 얘기되는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도 내용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의식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19대 국회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이 법을 처리함으로써 이 법의 이름을 19대 국회의원 전체의 이름으로 입법하는 개혁의 의지를 보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제출된 법안을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통과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 존 함)

○의장 정의화 김기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두 분 의원께서 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원 출신 새누리당의 김용남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없애자는 취지에서 본 법률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범죄를 수사하며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애썼던 사람 중의 한 명으로서 우리 사회가 보다 맑고 투명해지기를 동료·선배 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법률안 소위 김영란법은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면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저는 한 가지 문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한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법률안 22조제1항제2호를 보면 공직자 등은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위 불고지죄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금품 등을 받은 배우자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적어도 공직자 등이 신고하는 순간 수사기관에 불려가서 변호사법 위반 여부 내지는 다른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형법은 죄를 지은 범인을 숨겨 주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이 그 범인의 친족 또는 가족인 경우에는 범인은닉죄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살인범이라도 그 가족이 그 범인을 숨겨 주거나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기대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범인은닉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김영란법의 불고지죄 조항은 범인은닉죄의 이러한 정신과 정면으로 충돌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우리나라 법률체계는 가족 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소위 친족상도례의 규정을 여러 범죄나 행위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의 경우에도 반국가단체 구성·활동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과 친척이나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법률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한다면 두 가지 중의 하나여야 됩니다. 우리 국회가 앞

으로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선언을 하거나 아니면 오늘부터 배우자는 가족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 배우자는 가장 친한 가족이고 우리는 그러한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배제하는 형사정책적 결단을 내린 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장관이나 국회의원 등의 고위공직자에 한정하지 않고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지금 몇백만이 될지 몇천만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의 배우자로 하여금 형사처벌 받도록 신고를 강제하는 불고지죄 조항을 둔 것은 반드시 위헌 소지도 따져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법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에 서둘러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보다 완성도 높은 법률, 흠결 없는 법률안을 다음 임시국회에 처리하면서 지금 공포로부터 1년 6개월 후에 시행하도록 돼 있는 것을 1년 후에 시행하면 오히려 완벽한 법안을 보다 빨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에서 김영란법의 신속·조속한 처리는 선이고 이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마치 부패를 옹호하는 듯한 잘못된 이분법적 논리도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완성도 높은 그리고 현실적인 준수가능성이 높은 법률을 국민께 선사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법률안을 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김용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역사적인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2년 8월 입법예고된 지 2년 6개월 만에 우리나라를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해 줄 김영란법이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영란법이 우리나라의 공직자 부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반부패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과거에는 부정청탁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가도 대가성을 입증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대가성 입증 없이도 불법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되어 부패방지에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지난해 4월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우리 국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로 김영란법 통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국가 중에서도 경제력 수준이 세계 10위에 속할 정도로 선진국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고 국제적 위상도 높아져 있습니다. 이제 세계 어디에 나가도 대한민국의 드높은 위상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 수준으로 본 우리나라의 위상은 어떻습니까?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후진국입니다. 2011년부터 작년까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40등 바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월드컵에서 4강을 하고 올림픽에서 10위권 내에 들면 뭐하겠습니까?

많은 국민들도 김영란법 통과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는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동안 적용대상, 범위 등을 놓고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일리가 있는 의견들입니다. 자칫하면 우리나라가 검찰국가 될 수 있다,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하는 의견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영란법의 역사적 중요성을 생각했을 때 조금 더 허점 없는 안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끌기보다는 어렵게 여야 합의된 안을 이번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추후 고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4월 임시국회는 물론 앞으로 통과가 더 어려워질 겁니다. 재보선, 총선,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경쟁이 심화되고 정국이 경색된다면 법안 통과는 앞으로 요원할 겁니다.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오늘 국회, 주시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깨끗하고 투명한 대한민국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국민께 보여 드려야 합니다. 오늘 김영란법을 통과시킴으로써 강력한 반부패 의지 보여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입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안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했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26인, 반대 4인, 기권 17인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조금 전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소회를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이 법은 탄생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민들의 상호 신뢰에 기반한 선진 국가로 나아가려면 지금처럼 세계 46위의 부패지수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근본적으로 줄이지 않고는 빈부격차 해소도, 경제 발전도, 문화 융성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은 우리 사회를 맑고 투명한 선진사회로 바짝 다가서게 할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다만 과잉 입법이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에 철저한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72.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17시35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72항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안규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장대리 안규백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갑 출신 운영위원회 안규백입니다.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조정 및 정치

개혁의제 전반에 관한 사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으로 하고 여야 동수로 구성하며 활동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안규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농촌 출신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입니다.

지난해 10월 30일 현행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62곳에 달하는 지역구가 조정 대상이 되었습니다. 도시 지역 37곳 선거구가 늘어나고 농어촌 지방의 25곳 지역구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줄어드는 해당 지역구의 의원들은 농촌 지방이 단순히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지역 대표성은 무시된 채 1명의 국회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살필 수 없는 기형적인 선거구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그대로 앉아서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정의화 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는 고스란히 우리 농어촌 지방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지역 불균형의 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현재가 선거구 관련 위헌 결정을 내리기까지 변론 과정에서 농어촌 지방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야 할 국회에서조차 농어촌 지방의 목소리는 주변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도농 간 인구 편차와 각 분야에 있어서의 개발 불균형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농어촌 지방에 대한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완화해야 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 차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한다면 농어촌 지방의 이익들이 지역구 의원들에 의해서 대표되어야 할 이유 역시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단위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지역대표성을 감안한 제도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어촌 지방에 대한 기준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는 국민들의 의사가 정확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정치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을 통하여 국민의 의견이나 이해를 공정하고도 효과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정개특위에서는 농어촌 지방의 의견이나 이해를 적극적으로 구하고 반영해 주실 것을 간절히 촉구하고 싶습니다. 농어촌 지방의 목소리를 반영한 균형적인 정치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현재 결정 이후 저와 선거구 조정 대상이 된 농어촌 지방 의원님들은 함께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을 결성하여 대처해 왔습니다.

여야를 떠나 지역구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번 현재 결정대로라면 농어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실, 이 현실을 막아 내기 위해서 농어촌 지역구의 국민 한 분 한 분을 대변하기 위해서 마음과 뜻을 같이했습니다.

저는 농촌 출신 국회의원의원입니다. 농민과 서민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농어촌 지방의 현실을 국회마저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농민이 없는 도시는 없습니다. 농촌이 없는 국가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농어촌 지방 국민들의 바람이 이번 정개특위 선거구획정 기준 마련 논의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번 정개특위 구성 협의과정에서 농어촌 지역 중심의 조정 대상 의원들을 확정위에서 배제하겠다는 여야 지도부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 문제를 통해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농어촌 지방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이번 정개특위에 반드시 해당 의원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포함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요구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번 현재 결정으로 인해서 새롭게 조정될 수밖에 없는 농어촌

지방, 이 지역의 주민들의 바람을 간절히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찬반을 떠나 이번 이 자리가 아니면 이러한 현실을 동료 의원님들께 호소드릴 자리가 없어서 토론을 신청했던 것입니다.

정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갑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43인, 기권 3인으로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2.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손인춘 의원 대표발의)(손인춘·김상민·문대성·정희수·함진규·김을동·이자스민·윤명희·황인자·이진복 의원 발의)**

**33.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손인춘 의원 대표발의)(손인춘·정희수·김종태·윤명희·안규백·송영근·이강후·이진복·장윤석·황인자 의원 발의)**

**34.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35.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17시43분)

○부의장 정갑윤 의사일정 제32항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3항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4항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5항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손인춘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대리 손인춘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방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 한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요약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도 무기체계 연구개발 중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인바, 심사 결과 국·공유재산의 대부기간은 원칙적으로 20년 이내로 규정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합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 위탁 폐기처리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추진제 외에 화약류 및 자탄류까지 포함하고 폐기처리 위탁업체는 군용화약류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로 하려는 내용인바, 군용화약류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 외에 군용화약류의 사용·폐기 등의 허가를 받은 자도 위탁받을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정의 조항을 군인복지기금법과 일치시키고 현재 시행 중인 민간주택 전세금 대부 지원 제도와 관사 입주 보증금 등의 금전 징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한기호 의원님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첫째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정의 조항을 정비하고, 둘째 군인·군무원과 그 가족을 사기 진작사업의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며, 셋째 군인복지기금 전세대부계정의 재원으로 관사 입주 보증금 등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갑윤 그러면 먼저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0인 중 찬성 156인, 반대 23인, 기권 41인으로서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0인 중 찬성 183인, 반대 5인, 기권 32인으로서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6인 중 찬성 210인, 기권 6인으로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9인 중 찬성 212인, 기권 7인으로서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36.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근

의원 대표발의)(송영근·류지영·정희수·주호영·조명철·김성찬·권성동·김상훈·강은희·정갑윤 의원 발의)

**37.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9.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17시55분)

○부의장 정갑윤 의사일정 제36항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7항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8항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9항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0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백군기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대리 백군기 존경하는 정갑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백군기 의원입니다.

국방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 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영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 대상 범주의 범위를 이 법을 위반한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인바 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소추하지 않을 경우에도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 귀속이 가능토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폐기 등의 대상을 군사기밀 부분에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활동기한을 2015년 6월 30일까지로 명시하여 그때까지 동 위원회의 활동을 완결하려는 내용으로 그 기한 만료 후에 위원회 소관 사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규정하는 바가 없어 이를 국방부장관이 승

계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군포로 유해를 대한민국으로 반입한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에 대하여 그 국군포로 유해의 반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우 또는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대우 또는 지원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국군포로 또는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 시행 후 실시 사례가 없는 전사자유해 보호구역의 지정·공고 규정을 삭제하고 전사자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성찬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에 참여하여 얻어지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국가 등과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국방과학기술 이용계약의 주체에 각 군과 정부출연기관을 포함하고 중소·중견 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방산물자에 대한 수출허가기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갑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180인, 반대 2인, 기권 25인으로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198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6인, 기권 2인으로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199인, 기권 9인으로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서상기·박주선·이찬열·조정식·이개호·정진후·김태년·박홍근·설훈·박대출·서용교·윤재욱·안홍준·강은희·염동열·유은혜·윤관석·배재정·박혜자·유인태·유기홍·도종환 의원 발의)

**42. 생활체육진흥법안**(김장실 의원 대표발의)(김장실·서용교·유기준·김세연·유재중·나성린·홍문표·이현승·이진복·정의화·김태흠·김성찬·서병수·이완영·정희수·김진태·김무성·김미희·이우현·윤영석·이완구·김동철·박인숙·이주영·서상기·정문헌·김도읍·박대출·김광립·오제세·조현룡·김우남·김성태·김춘진·조원진·김민기·강석훈·박성호·김한표·김태원·이상민·김영우·길정우·홍일표·김재운·서영교·백재현·노철래·김희국·함진규·박덕흠·신성범·이이재·김상훈·권은희·이학재·우원식·이현재·임내현·강동원·한기호·김태년·원혜영·남경필·박영선·강창일·강길부·이윤석·박대동·홍영표·김승남·이낙연·김관영·김태호·박남춘·박주선·전정희·조해진·김영록·손인춘·박성효·신의진·안덕수·류지영·안홍준·유정복·진영·박창식·김재경·황진하·강은희·박명재·윤재욱·안민석·홍지만·신경림·이한성·최재성·한명숙·윤호중·김광진·이상직·윤후덕·이원욱·황주홍·심재권·최원식·임수경·민홍철·정청래·강기정·안규백·유승민·김정록·정우택·윤상현 의원 발의)

**4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배재정·배기운·진선미·손인춘·정진후·김상희·유은혜·김태년·도종환·박홍근·박남춘·

정성호·김광진·윤관석 의원 발의)

**44.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조해진·조현룡·문대성·홍지만·김희정·남경필·이재영·金永柱·이우현·박상은·김한표 의원 발의)

**4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46.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8시01분)

○**부의장 정갑윤** 의사일정 제41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2항 생활체육진흥법안, 의사일정 제43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4항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45항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6항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안민석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안민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안민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체육단체 통합 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하는 것입니다.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바탕 위에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는 선진국형 체육모형을 갖추는 것입니다.

체육단체 통합은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추진해 온 오랜 체육계의 숙원이었습니다마는 해결되지 못했다가 드디어 오늘 20여 년 만에 양 단체 통합을 위한 의결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법이 통과되면 2017년 2월 이전까지 통합체육회 출범과 함께 종목별·지역별 통합이 동시에 진행되므로 엘리트와 생활체육의 분열과 갈등이 해소되고 선진국처럼 엘리트와 생활체육이 연계·통합 발전되므로 한국 체육의 부흥기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김장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체육진흥

법안은, 첫째 국민체육진흥법과 조화를 이루고 생활체육 진흥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생활체육 활동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였고, 둘째 국민생활체육회 사업 중 생활체육대회 관련 사항을 통합 조정하고, 생활체육종목단체와 지역 생활체육회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과 나머지 문화재 관련 4건의 법안에 대해서는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갑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7인 중 찬성 183인, 반대 3인, 기권 11인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생활체육진흥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1인 중 찬성 196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생활체육진흥법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200인, 기권 1인으로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6인, 기권 2인으로서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4인, 기권 2인으로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4인, 기권 4인으로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 마는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의사일정 제57항부터 제63항까지를 먼저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제출)

**58.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김태원·박인숙·박기춘·이에리사·우원식·김태년·김기현·안효대·박대동·강길부·이채익·서상기 의원 발의)

**5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안규백·김승남·신경민·도종환·김을동·박홍근·김태년·이인영·이우현 의원 발의)

**60.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제출)

**6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최민희·윤호중·이원욱·배재정·서영교·유은혜·남인순·김상희·신학용·백재현·문병호·전순옥·윤관석·정성호·박남춘 의원 발의)

**62.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최민희·강기정·원혜영·전병헌·강창일·배재정·임내현·이개호·김동철 의원 발의)

**6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전병헌·진성준·배기운·이종걸·부좌현·이만우·박주선·신경민·김우남·윤호중·정성호·박민수·최동익·유승희 의원 발의)

(18시11분)

○부의장 정갑윤 의사일정 제57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8항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9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0항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2항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3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강길부 의원 나 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대리 강길부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강길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청래 의원과 전병헌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홈쇼핑 사업자가 납품업체에 대하여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사업승인을 취소하는 등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한미 FTA 방송 분야 유보사항이 오는 3월 15일로 기간이 경과될 예정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방송채널사업자의 지분 소유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갑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13년 3월 정부조직법 개정 시 여야 합의의 후속조치로 울산과학기술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에서 과학기술원으로 지위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감독관청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전문석사 과정을 운영하여 고급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개발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구관리계획을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하도록 하고, 연구개발특구 내의 산업시설구역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보다 세분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진흥법안을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클라우드컴퓨팅 활용 및 도입 의무, 클라우드컴퓨팅 산업단지 조성근거 등을 명시하는 한편, 이용자 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 및 재발 방지 조치, 이용자 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규모 재난사태를 악용한 불법 광고성 정보를 근절하기 위하여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해외 구매대행 등을 금지하는 현행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병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IPTV 사업자에 대하여 유료방송 가입 가구의 3분의 1 초과 금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IPTV 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SO나 위성방송사업자까지 모두 합산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도서·산간 등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지역은 가입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였고, 제한의 지역 기준도 방송구역 단위가 아닌 전국 단위로 수정하였으며, 개정안을 통하여 강화된 합산 규제는 3년간 일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갑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83인, 기권 16인으로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60인, 반대 4인, 기권 30인으로서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7인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3인, 기권 1인으로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7인, 기권 4인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7인, 기권 4인으로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89인, 반대 2인, 기권 12인으로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47.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4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4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50.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51.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8시23분)

○부의장 정갑윤 의사일정 제47항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8항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9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0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1항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이종훈 의원 나오서

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이종훈**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교육부 소관 법률안 중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는 국립대학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둘째 국립대학에 국가 지원금과 대학의 수입을 통합·운영하는 대학회계를 설치하며 이를 심의하는 재정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국립대학의 소속 교직원에 대해 교육·연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기존 기성회 직원을 대학회계직원으로 신규채용하며 보수 및 복무 등의 근로조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교육공무원의 성범죄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교장의 임기보다 짧은 경우에도 교장으로 다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되 성범죄 행위 등의 경우에는 징계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의결이 가법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청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갑윤 부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으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중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다시 인정을 받도록 하였고,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을 폐지 또는 중단하려는 경우 신고의무를 두도록 하였으며,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조치의 유형을 다양화 하였습니다.

끝으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의 단계별 응시자격 제한을 완화하여 단계에 상관없이 응시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

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석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47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두 분 의원의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진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여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를 뜨겁게 달궜던 공약, 반값등록금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여야의 모든 대통령후보들이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입을 모아 약속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임기 3년 차에 접어드는 지금 여야의 대통령후보들이 목소리를 높였던 반값등록금은 어찌 됐습니까? 1년에 116조원의 막대한 복지예산을 쓰는 정부가 젊은이들의 등록금은 낮춰 줄 돈이 없다며 핑계를 대는 차에 반값등록금 공약은 말 그대로 공약이 되어 버린 지 오래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기성회비란 본래 학교 발전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내는 후원금을 말합니다. 사실 법적으로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이지요. 그런데 국립대학들은 수십 년간 기성회비를 무조건 내야 하는 돈인 것처럼 꾸며서 등록금과 같이 일괄적으로 부과해 왔습니다.

등록금을 올리면 될 것을 굳이 기성회비를 걷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국가 일반회계에 들어가는 등록금은 국가의 통제를 받지만 비국고회계로 편입되는 기성회비는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대학은 총장공관의 구입은 물론 총장 개인주택에서 쓰는 벽걸이 TV까지 기성회비에서 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해 온 결과 현재 국립대학 등록금에서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2%에 달합니다. 이에 2010년부터 국립대 학생들은 불법적으로 징수한 기성회비를 돌려 달라는 소송을 내기 시작했고 현재 잇따라 승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법적인 근거 없이 기성회비를 징수해 온 국립대학과 이를 알고도 묵인하여 국립대학의 재정 부실을 초래한 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국립대학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그만큼 등록금을 인상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성회비를 걷는 것이 불법이 되어 버리자 이전 법까지 만들어 가면서 이를 합법화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연간 등록금의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올해 등록금 인상률 한계는 2.4%여야 합니다. 그런데 본 법이 통과되면 국립대학의 등록금은 평균 400%에서 최대 2700%까지 인상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은 올해 국립대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 인상률 제한적용을 면제하는 부칙조항까지 삽입해 가면서 이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법은 단순히 기성회비를 등록금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의 문제입니다. 이 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과거 기성회비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수업료를 국민에게 떠넘겨왔던 국가의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어 그 책임을 온전히 국민이 떠안아야 합니다. 우리 국가가 이런 식으로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은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기성회비를 폐지하는 대신에 과거 기성회비로 징수해 왔던 비용을 국가가 단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면 반값등록금 공약을 국립대학부터 우선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12년 5월 30일 과도한 등록금 부담을 낮추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며 출범한 우리 19대 국회를 기억해 주십시오. 3년 전 국민에게 했던 반값등록금의 약속을 지킬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그나마 살아 있던 반값등록금의 불씨는 완전히 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법안을 부결시키는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이 법안을 부결시켜 주시면 국가의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수업료 부담을 완화한 법안을 새로 입법하여 2012년 국민과 했던 약속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이 법안이 부결된다 하더라도 당장 국립대학 재정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립대학은 올해 기성회비를 등록금에 통합 징수하거나 등록예치금 등의 형태로 이미 납부를 받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상임위에서 새로운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시간은 충분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의원님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석현** 김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입니다.

오늘 국립대학에 관한 국가의 지원의무와 국립대학에 지원하는 운영비의 확대 노력을 규정하려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이 상정되었습니다.

물론 방금 앞서 토론하신 김광진 의원의 말씀이 상당히 일리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가 전체의 재정현황과 고등교육 전체의 재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3년도 회계를 기준으로 하면 고등교육재정은 10조 5341억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국립대학에 투입된 재원은 전체의 고등교육 재원 중에 50.2%에 해당되는 5조 5000억 정도가 국립대학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국립대학의 설치근거로 인해서 국립대학 자체에 대한 모든 재정 지원은 국가가 책무를 지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나 우리 고등교육 전체의 재정현황과 우리 국가 전체의 재원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법안을 상정해서 통과하지 못한다면 미리 예치했던 기성회 대응으로 된 모든 등록금을 제대로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2월에 등록금이 징수된 부분이 부칙

을 통해서 공표한 날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회계의 회계연도는 보통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2월까지 종료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의 18조에는 국립대학의 회계는 다시 1월과 2월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까지 명시해 놓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국립대학의 고등교육에 책임지는 책무에 대해서는 엄중함을 저희 의원들이 모두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정 여건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수많은 국립대학들은 재정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적인 형태로 우리 고등교육의 재정을 더 높이고 국립대학의 책무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의원이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될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급한 상황에서 당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현명하게 선택해 주셔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안만큼은 여야가 2012년에 이미 상정이 되어서 오랫동안 숙고한 과정에 걸쳐 왔던 법들입니다. 이상적이지 않지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가 긴밀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국가 고등교육을 염려하시고 국가 책무를 엄중하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이해를 하지만 현실의 다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우리 의원들의 책무라고 생각하니 부디 오늘 법안을 찬성하여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석현 강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03인, 반대 40인, 기권 45인으로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7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9인, 기권 2인으로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9인, 기권 2인으로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3인, 기권 1인으로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5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박성호·정희수·이만우·유승우·이한성·장윤석·정문현·강기윤·김성찬·김태원 의원 발의)

**5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군현 의원 대표발의)(이군현·김세연·김용태·김태원·김태흠·민병주·박성호·박민식·박인숙·신성범·여상규·유일호·유재중·한선교 의원 발의)

**55. 대학도서관진흥법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윤관석·서용교·유승우·박성호·이낙연·김우남·민병주·문대성·강은희·최봉홍·하태경·이철우·정진후·서상기 의원 발의)

**5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이낙연·박성호·박창식·김상훈·강은희·김상민·조원진·송영근·김장실·정갑윤·윤관석 의원 발의)

(18시42분)

○**부의장 이석현** 의사일정 제52항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3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4항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5항 대학도서관진흥법안, 의사일정 제56항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강은희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강은희**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강은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교육부 소관 법률안 중 나머지 5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유치원비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조금 반환 등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

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력인정 시험의 시행 근거를 통합하고 검정고시 합격자의 대입 전형자료를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제공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약학과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학과를 설치 또는 폐지하는 경우 그 계획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 등의 계약 준수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학과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수정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학도서관진흥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학도서관의 진흥을 통해 대학의 교육 및 연구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대학도서관의 설립·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둘째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대학도서관 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대학의 장은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대학의 특성에 맞는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셋째, 대학도서관의 연구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학도서관 간 종합목록 구축, 상호대차 협력, 디지털자료의 공동 활용, 학술자료의 공동 수집 및 보존 등 대학도서관 간의 교류·협력을 의무화하였고, 넷째 교육부장관이 대학도서관의 시설·인력 및 도서관 자료의 운영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대학도서관에 대한 재정 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했습니다.

끝으로 김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재산 관리 및 회계 관련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해서 수정 의결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석현** 그러면 먼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78인, 기권 4인으로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기계가 작동 안 하나요, 그쪽에? 진선미 의원님?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79인, 기권 6인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6인, 기권 4인으로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학도서관진흥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4인, 기권 4인으로서 대학도서관진흥법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5인, 기권 5인으로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4. 대한민국과 태국 간의 민사 및 상사 사법 공조 조약 비준동의안**

**65.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범죄인 인도에 관한 조약 비준동의안**

**66.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67.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68. 북태평양 공해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69.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문화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18시51분)

○부의장 이석현 의사일정 제64항 대한민국과 태국 간의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65항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범죄인 인도에 관한 조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66항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67항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68항 북태평양 공해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69항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문화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심윤조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일위원장대리 심윤조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심윤조 의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6건의 비준동의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



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석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한민국과 태국 간의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0인 중 찬성 180인으로서 대한민국과 태국 간의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범죄인 인도에 관한 조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4인 중 찬성 182인, 기권 2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범죄인 인도에 관한 조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5인 중 찬성 184인, 기권 1인으로서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1인 중 찬성 180인, 기권 1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북태평양 공해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5인 중 찬성 182인, 기권 3인으로서 북태평양 공해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문화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0인 중 찬성 179인, 기권 1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문화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70. 201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기획재정위원장 제출)

(18시58분)

○부의장 이석현 의사일정 제70항 201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보고한 201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임위원장의 구두보고는 관례에 따라

서 생략하고, 201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1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방금 채택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시정 및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73.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한표·황인자·박윤옥·이종진·김명연·이채익·문정림·윤명희·이종배 의원 발의)

**7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7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7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7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9시00분)

○**부의장 이석현** 의사일정 제73항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4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5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6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7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김용익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김용익**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2개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게 되는 통합식품

안전정보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통합 식품안전정보망 운영·위탁 등에 필요한 규정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기타 일부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윤옥 의원, 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조정 통합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위생사를 신규 위생교육 대상에서 제외하고 유사제도와 중복되어 운영되고 있는 시민 식품감사인 제도와 위생수준 안전평가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영업관리관청이 직권 말소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조정 통합한 것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포함하여 신분조회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의무 고지 및 교육을 강화하며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의원과 최동익·홍지만·김현숙·남인순·문정림·김영록·신학용·박인숙·류지영·김성주·김광진·이명수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조정 통합했습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고, 아동학대자에 대한 제재 강화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어린이집 설치·운영 자격을 20년 동안 제한하고, 아동학대 의심 시 지자체의 장이 보육교사 등을 조사·검사한 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어린이집 폐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보육교직원의 심리상담 등을 담당하는 상담전문요원제를 도입하고,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내용을 반영하고 의약품 특허권에 관한 실효적 보호를 위하여 특허권자 등이 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 자료를 근거로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의약품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허 도전 및 의약품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등재 의약품의 특허권 효력을 다투어 승소한 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의약품을 우선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판매금지 및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약처장이 동 제도가 국내 산업보전정책 등에 미치는 영향 또는 해외 사례 등을 분석·평가한 후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며, 특허권자와 후발의약품 허가 신청자 간에 우선판매품목허가 등에 관한 합의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식약처와 공정거래위 등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고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충분히 검토해서 법사위에 회부한 법안이 법사위에서 내용이 변경되거나 심사 보류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유사한 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국회법 제37조1항을 보면 법사위는 법률안, 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해당 상임위가 검토하고 법사위는 법의 기술적 측면만을 심사하는 것이 국회법의 취지입니다. 내용을 심사하는 것은 법사위의 권한이 아닙니다. 법사위가 변경한 법조문의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라 법사위가 내용 변경을 한다는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법사위는 상임위가 제안한 법의 체계·형식·자구만을 다룰 수 있습니다.

국회법이 준수되고 상임위 중심주의가 유지·발전되도록 각 상임위는 제 분수를 지키고 권한의 한계를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법사위의 권한 밖 법안 처리가 계속된다면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석현** 김용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9인 중 찬성 179인으로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0인 중 찬성 179인, 기권 1인으로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7인 중 찬성 176인, 기권 1인으로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제76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전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후 의원**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정진후 의원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이 법률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변명도, 설명도 필요 없이 아동학대는 그 자체가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이 어린이집은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유아교육법상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적 관점에서 보육의 교육적 기능과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교사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교육을 지향하는 그 현장을 CCTV를 통해서 일상적으로 감시·감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들어서 모든 가정에 CCTV 설치를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또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들어서 모든 교실에 CCTV의 설치를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타당한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시에 의한 강요된 서비스가 아이들의 보육의 내용, 보육의 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육에 필요한 것은 사랑이지 감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이미 상당수의 어린이집이 자율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있다’, 그러면 자율적으로 논의하도록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급한 일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급한 일은 아동보육시설, 보육정책 그리고 이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고 화급한 일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어린이집은 설립 주체에 따라서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이렇게 일곱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과 운영, 보육교직원의 자격과 보수교육 등 전반적인 관리·감독, 어린이집 평가인증 이 모든 권한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어떻게 아동학대 보육교사, 그런 어린이집 원장이 생겼는지,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교사와 원장에 의해서 어린이집이 운영되도록 할 것인지 살피고 대책을 내놓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책임지는 보육교사의 양성체계, 지도 감독 기관의 역할 그리고 점검, 내용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선돼

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손 놓고 있다가 아동학대 사건이 터지니까 ‘그저라도 하자’ 이런 식으로 CCTV 의무 설치를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CCTV가 만능이 아닙니다. 보육교사와 어린이집에 대한 감시 강화가 어떻게 질 높은 보육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단호하게 처벌되 보육교사 전체의 긍지를 꺾어 버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종청사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논의 결과를 살펴보십시오.

CCTV의 실시간 중계를 놓고 토론을 벌인 끝에 실시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리면서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

어린이집의 CCTV 설치는 아동학대의 해결책이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동학대 예방효과 면에서, 다른 인권의 침해 가능성 면에서, 행복한 보육여건 조성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여타의 대책이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논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검토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석현 정진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171인 중 찬성 83인, 반대 42인, 기권 46인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5인, 기권 3인으로서 약  
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  
원장 제출)**

**79.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김희정·서  
병수·주호영·김태원·김무성·이학재·  
권은희·김장실·이군현·서용교·문정  
림·강은희·서상기 의원 발의)**

(19시17분)

○부의장 이석현 의사일정 제78항 아시아문화중  
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 의사일정 제79항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박혜자 의원 나오서  
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  
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박혜자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혜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안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시아문  
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2015년 9월 개관 예정인  
아시아문화의전당의 운영·조직 등에 관한 사항  
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의  
탄력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국립아  
시안문화의전당 운영의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  
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문화전당의 운영  
을 위탁받은 아시아문화원 등에 대해서는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행법에 의해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  
을 경우에는 400여 명의 공무원을 채용하고 국가  
가 전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김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회  
의복합지구 및 국제회의 집적시설의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제회의복합지구의 국제회의  
시설 및 국제회의 집적시설에 대한 개발부담금  
등의 감면은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감  
면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  
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석현 박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23인, 반대 16인, 기권 22  
인으로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38인, 반대 8인, 기권 18  
인으로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  
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5분자유발언**

(19시23분)

○부의장 이석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남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 이석현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김제남입니다.

국민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도, 바뀌어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세월호 참사의 뼈저린 반성이자 교훈입니다.

그러나 지난 2월 27일 새벽 1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명이 끝나 멈춰 있는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겠다고 국민 안전을 무시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2월 27일은 국민 안전을 포기한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노후하고 수명이 끝난 원자력발전소는 위험합니다. 특히 원전의 고장과 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돼 있는 만큼 노후원전 재가동 여부는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후원전 수명연장은 최신의 최고의 안전성은 물론 경제성과 수용성 등 충분한 토론을 바탕으로 합의 처리되어야 합니다.

원안위 위원장도 국회에 나와 월성 1호기에 대해 충분한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심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성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원안위원과 지역주민, 시민사회의 강력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원안위는 정부 여당 추천위원 7명만으로 표결을 강행처리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반대의견을 표명한 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도 아닌 표결로 처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월성 1호기는 수명연장 심사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에 명시된 최신 안전기술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월성 2·3·4호기에는 적용된 최신기술이 월성 1호기에는 필요 없다 말하는 것은 최신의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습니다. 원자력안전법 제103조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안위는 월성 1호기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법안 개정 이전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최소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보자고 하는 원안위원 제안까지 묵살했습니다.

원자력안전법은 행정법규로 불소급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안위는 국회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견을 수렴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든

다며 오히려 주민보다 사업자인 한수원의 사정만 들었습니다. 심지어 한수원 사장을 깜짝 출연시켜 주민 수용성을 약속하면 개정법의 내용을 이행하는 것으로 하자는 등 법을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이는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자 국회와 국민을 모욕하는 일이었습니다.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하며 표결 강행처리한 원자력위원장은 이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을 위반한 이은철 원안위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백히 밝혀 둡니다.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하며 심의·표결에 참여한 조성경 위원은 원안위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부적격자였습니다. 원안위 위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최근 3년 이내에 원전 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 퇴직해야 마땅했습니다.

2014년 6월에 임명된 조성경 위원은 한수원 신규원전부지선정 위원으로 열두 번의 회의수당으로 1800여만 원을 받으며 활동했습니다. 이러한 부적격자가 심의·표결까지 행사한 이번 회의는 원천 무효입니다. 또한 부적격 사유가 명백함에도 회의에서 배제하지 않고 강행한 원안위 위원장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독립적인 규제기관이 아님을 스스로 밝힌 것입니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안이 통과된 이후 새누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고리 1호기 폐쇄 촉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가운 일입니다. 고리 1호기가 폐로되어야 하는 이유는 노후되었고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월성 1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리 1호기 주변 340만 명 부산·울산 시민의 안전이 중요하듯이 월성 1호기 주변 130만 명 경주·울산 시민들의 안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재검증 없이는 고리 1호기 안전검증과 폐로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노후원전 수명연장 여부는 기술적 안전성은 물론 경제성과 국민 수용성을 포함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래 세대의 부담까지 총체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에서 월성 1호기·고리 1호기 안전성 검증은 물론 경제성과 수용성을 포함해 노후원전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을 실시해야 합니다.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국회가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 안전에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명 끝난 월성 1호기·고리 1호기 수명연장 검증에 대해 국회가 특위 구성 등을 통해서 여야 의원 여러분들께서 검증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석현 김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사진행의 건

(19시28분)

○부의장 이석현 다음은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의원 우리나라 국유지는 2013년 말 현재 539만 필지(2만 4240km<sup>2</sup>)로 전체 국토면적의 24%입니다. 지금까지의 국유지 관리는 유지 보존에만 맞춰져 왔었는데 앞으로는 필요한 부분은 개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정책 전환을 제안합니다.

국가 소유의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 예비군훈련장 등 군사시설,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들이 제값대로 쓰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도시화가 계속 진행되는 바람에 예전에는 변두리 외진 곳에 있던 국유시설들이 어느덧 도시 한복판에 있게 돼 도시환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돼 버린 곳은 없는지 점검해야만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안양교도소입니다. 안양교도소는 1963년에는 시흥군 안양읍 시절, 변두리 허허벌판에 세워졌지만 52년이 지난 지금은 도시화로 어느덧 안양시 호계동, 도심 한복판이 돼 버렸습니다.

당연히 교도소를 이전하라는 요구가 주민들로부터 계속 있었고 이에 따른 불필요한 마찰과 불만도 적지 않았던 것이 저간의 사정입니다.

교도소 이전에 대한 주민들의 숙원을 알고 있기에 저는 당국에 안양교도소를 도심 외곽으로

옮겨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낡은 교도소를 리모델링하는 것에만 신경 쓸 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정부 당국에 요청합니다.

안양교도소를 도심 외곽으로 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안양교도소의 위치는 안양시 한복판으로 땅값도 매우 비싸 이전비용을 충당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교도소를 이전한 자리가 부가가치가 높은 상업지구나 도시형 첨단지식단지로 전환되면 고용과 생산 등에서도 훨씬 더 높은 국민경제의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울러 세수도 확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수는 잘 알다시피 2012년에 2조 8000억 원, 2013년에 8조 5000억 원, 2014년에는 10조 9000억 원으로 3년 연속 결손됐습니다. 이 같은 경기 침체, 세수 결손이 계속되는 상황이기에 국유지의 개발 활용이 더욱 필요한 현실입니다.

제가 말하는 개발 활용이라는 것은 국유지를 팔아서 세입을 늘리자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국유지 상태를 다시 한 번 점검해 팔지 않고도 적절한 방식으로 개발 활용하면 침체된 경제에도 활력을 더할 수도 있고 국가세입도 늘릴 수 있고 주민들의 불만도 해결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 당국에서는 안양교도소 이전과 후속 개발로 지역과 국가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데 주저하지 말고 적극 나서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같은 내용을 5분발언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부득이 의사진행발언 형식을 빌렸음을 양해 바랍니다.

○부의장 이석현 심재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2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3인)

찬성 의원(223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 석 호	강 석 훈	강 은 희	강 창 일
강 창 회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권 垠 希	길 정 우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립	김 기 선	김 기 식	김 기 준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민 기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성 곤	김 성 주	김 성 찬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주
김 영 환	김 용 남	김 용 태	김 우 남
김 윤 덕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정 록
김 제 남	김 종 훈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미	김 현 숙	김 회 선
김 회 국	나 경 원	나 성 린	남 인 순
노 웅 래	도 중 환	류 성 결	문 대 성
문 재 인	문 정 립	문 희 상	민 현 주
민 흥 철	박 광 온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덕 흙	박 명 재	박 민 수
박 민 식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성 호
박 영 선	박 완 주	박 원 석	박 윤 옥
박 인 숙	박 주 선	박 혜 자	박 흥 근
배 재 정	백 재 현	변 재 일	서 상 기
서 용 교	설 훈	손 인 춘	송 영 근
송 호 창	신 경 립	신 계 룬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신 의 진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심 학 봉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철 수
안 흥 준	안 효 대	양 창 영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유 기 흥	유 대 운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의 동	유 인 태	유 일 호	유 재 중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영 석	윤 재 옥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강 후	이 개 호
이 균 현	이 노 근	이 만 우	이 명 수
이 목 희	이 미 경	이 상 일	이 상 직
이에리사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원 욱	이 이 재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재 영	이 재 오	이 정 현	이 종 배
이 종 진	이 중 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우	이 현 재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현 승	이 현 재
인 재 근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전 병 현	전 순 욱	전 정 희	전 하 진
정 갑 윤	정 문 현	정 미 경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용 기
정 우 택	정 의 화	정 진 후	정 청 래
정 호 준	조 경 태	조 명 철	조 원 진
조 정 식	조 해 진	진 선 미	진 성 준
진 영	최 규 성	최 동 익	최 민 희
최 봉 흥	최 원 식	최 재 성	최 재 천
하 태 경	한 기 호	한 명 숙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의 표
홍 중 학	홍 지 만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인 자	황 주 흥	황 진 하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2인)

찬성 의원(231인)

강 기 윤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 석 호	강 석 훈	강 은 희	강 창 일
강 창 회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권 垠 希	길 정 우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립	김 기 선	김 기 식	김 기 준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민 기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성 곤	김 성 주	김 성 찬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영 환	김 용 남	김 용 태
김 우 남	김 윤 덕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정 록	김 제 남	김 종 훈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미	김 현 숙
김 회 선	김 회 국	나 경 원	나 성 린
남 인 순	노 웅 래	도 중 환	문 대 성
문 재 인	문 정 립	문 희 상	민 병 두
민 현 주	민 흥 철	박 광 온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덕 흙	박 명 재
박 민 식	박 범 계	박 성 호	박 영 선
박 완 주	박 원 석	박 윤 옥	박 인 숙
박 주 선	박 혜 자	박 흥 근	배 재 정
백 군 기	백 재 현	변 재 일	부 좌 현
서 상 기	서 용 교	설 훈	손 인 춘
송 영 근	송 호 창	신 경 립	신 계 룬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신 의 진
신 정 훈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심 학 봉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철 수	안 흥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양 창 영	여 상 규	염 동 열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원유철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김을동	김장실	김재원	김정록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김태호	김태환	김학용	김한표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희선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개호	김희국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이균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노응래	도종환	류성결	문대성
이목희	이미경	이상일	이상직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기춘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박남춘	박대동	박덕흠	박명재
이인제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박성호	박영선	박완주	박윤옥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박인숙	박주선	박홍근	배재정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헌승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서상기	서용교	설훈	손인춘
장병완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계륜
전하진	정갑윤	정문헌	정미경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민석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양창영	염동열	오영식	오제세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진영	우상호	우원식	원유철	유기홍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유대운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한정애	함진규	홍문표	홍익표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개호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이균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이미경	이상일	이상직	이에리사

**기권 의원(1인)**

박민수

(신정훈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231인, 기권 의원 1인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2인)**

**찬성 의원(222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석호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권영희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길정우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김기식	김기준	김동완	김동철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진영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김상훈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한정애	함진규	홍문표	홍익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b>기권 의원(10인)</b>			
강동원	김경협	김상희	김제남
박원석	이목희	이찬열	장병완
정진후	황영철		

윤명희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상일
이상직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중배	이중진	이중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전병헌	전순욱
전정희	전하진	정갑윤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표	홍익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인자	황주홍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0인)

찬성 의원(229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권垠希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원	김정록	김제남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문대성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덕흠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홍근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상기	서용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민석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유철	원혜영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기권 의원(1인)

추미애

(이현승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229인, 기권 의원 1인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6인)

찬성 의원(225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권垠希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식	김기준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원
김정록	김제남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학용

김한표 김현미 김현숙 박광온  
 김희선 김희국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김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문대성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민석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유원식 원유철 원혜영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상일 이상직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정갑윤  
 정문헌 정미경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규성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익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인자 황주홍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1인)

찬성 의원(229인)

장기윤 장기정 장길부 장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권垠希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립 김광진 김기식 김기준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원 김정록 김제남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문대성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민석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유원식 원유철 원혜영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상일 이상직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정갑윤  
 정문헌 정미경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규성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익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인자 황주홍

기권 의원(1인)

이 원 옥 이 윤 석 이 이 재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재 영 이 재 오 이 정 현  
 이 종 배 이 종 진 이 종 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현 승  
 이 현 재 인 재 근 임 수 경 장 병 완  
 전 병 현 전 정 희 전 하 진 정 갑 윤  
 정 문 현 정 미 경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용 기 정 우 택 정 의 화  
 정 진 후 정 청 래 정 호 준 정 희 수  
 조 경 태 조 명 철 조 원 진 조 정 식  
 조 해 진 주 승 용 진 선 미 진 성 준  
 진 영 최 규 성 최 민 희 최 봉 홍  
 최 원 식 최 재 성 최 재 천 추 미 애  
 하 태 경 한 기 호 한 명 숙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익 표 홍 지 만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인 자 황 주 홍  
 황 진 하

**기권 의원(2인)**

김 용 태 전 순 옥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7인)**

**찬성 의원(226인)**

강 기 윤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 석 호 강 석 훈 강 은 희 강 창 일  
 강 창 희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권 垠 希 길 정 우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립 김 광 진 김 기 식 김 기 준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민 기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성 곤 김 성 주 김 성 찬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영 환 김 용 남 김 용 익  
 김 용 태 김 우 남 김 윤 덕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재 원 김 정 록 김 제 남  
 김 종 훈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김 현 미 김 현 숙 김 회 선  
 김 희 국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도 중 환 류 성 결 문 대 성 문 재 인  
 문 정 립 문 회 상 민 병 두 민 현 주  
 민 홍 철 박 광 온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덕 흙 박 민 수 박 민 식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성 호 박 영 선

박 완 주 박 원 석 박 윤 옥 박 인 숙  
 박 주 선 박 홍 근 배 재 정 백 군 기  
 백 재 현 변 재 일 부 좌 현 서 상 기  
 서 영 교 서 용 교 설 훈 손 인 춘  
 송 영 근 신 경 립 신 계 룬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신 의 진 신 정 훈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심 학 봉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철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양 창 영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원 유 철  
 유기 홍 유 대 운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의 동 유 인 태  
 유 일 호 유 재 중 윤 관 석 윤 명 회  
 윤 재 옥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강 후  
 이 개 호 이 균 현 이 노 근 이 만 우  
 이 명 수 이 목 회 이 미 경 이 상 일  
 이 상 직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원 옥 이 윤 석 이 이 재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재 영 이 재 오 이 정 현  
 이 종 배 이 종 진 이 종 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현 승  
 이 현 재 인 재 근 임 수 경 장 병 완  
 전 병 현 전 순 옥 전 정 희 전 하 진  
 정 갑 윤 정 문 현 정 미 경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용 기  
 정 우 택 정 의 화 정 진 후 정 청 래  
 정 호 준 정 희 수 조 경 태 조 명 철  
 조 원 진 조 정 식 조 해 진 주 승 용  
 진 성 준 진 영 최 규 성 최 민 회  
 최 봉 홍 최 원 식 최 재 성 최 재 천  
 추 미 애 하 태 경 한 기 호 한 명 숙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익 표  
 홍 지 만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인 자  
 황 주 홍 황 진 하

**기권 의원(1인)**

원 혜 영

(문정림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226인, 기권 의원 1인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4인)**

**찬성 의원(221인)**

강기윤 강석호 강창희 길정우 김광진 김동철 김상민 김성주 김승남 김영환 김우남 김재원 김춘진 김태환 김현숙 남인순 문대성 민현주 박대동 박민식 박영선 박인숙 배재정 부좌현 신경립 신의진 심윤조 안규백 안효대 염동열 우원식 유대운 유승희 유일호 윤영석 이강후 이만우 이상일 이운룡 이정현 이주영 이철우 장병완

강기정 강석훈 강경대 김경협 김기선 김명연 김상훈 김성찬 김영록 김용남 김윤덕 김정록 김태년 김한표 김희선 노웅래 문재인 민홍철 박덕흠 박범계 박완주 박주선 백군기 서상기 신기남 신정훈 심재권 안민석 양승조 오영식 원유철 유성엽 유은혜 유재중 윤재욱 이개호 이명수 이상직 이원욱 이인제 이종배 이진복 이춘석 이현병

강길부 강은희 권성동 김관영 김기준 김무성 김상희 김성태 김영우 김용익 김을동 김제남 김태원 김현국 도종환 박기춘 박맹우 박병석 박원석 박혜자 설훈 신동우 신학용 심재철 안철수 양창영 오제세 원혜영 유승민 유의동 윤관석 윤호중 이근현 이목희 이에리사 이윤석 이재영 이종진 이찬열 이학영 인재근 옥

강동원 강창일 권은희 김광림 김동완 김민기 김성곤 김세연 김영주 김용태 김장실 김종훈 김태호 김현미 나성린 류성결 민병두 박남춘 박명재 박성호 박윤옥 박홍근 변재일 송영근 신성범 심상정 심학봉 안홍준 여상규 우상호 유기홍 유승우 유인태 윤명희 윤후덕 이노근 이미경 이우현 이이재 이재오 이종훈 이채익 이학재 임수경 전정희

전하진 정병국 정용기 정청래 조원진 진선미 최동익 최재천 한명숙 홍철호 황진하

정갑윤 정성호 정우택 정호준 조정식 진성준 진민희 추미애 한선교 황영철

정문현 정세균 정의화 정희수 조해진 진영 최봉홍 하태경 함진규 황인자

정미경 정수성 정진후 조명철 주승용 최규성 최재성 한기호 홍익표 황주홍

**기권 의원(3인)**

박민수 서용교 조경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0인)**

**찬성 의원(229인)**

강기윤 강석호 강창희 길정우 김광진 김동완 김민기 김성곤 김승남 김영환 김우남 김재경 김춘진 김태환 김현숙 남인순 문대성 민병두 박기춘 박맹우 박범계 박완주 박주선 서상기 송영근 신동우 신학용 강기정 강석훈 경대수 김경협 김기선 김동철 김상민 김성주 김영록 김용남 김윤덕 김재원 김태년 김한표 김희선 노웅래 문재인 민홍철 박남춘 박명재 박성호 박윤옥 박원석 박혜자 변재일 송영근 신성범 심학봉 안홍준 우상규 유기홍 유승우 유인태 윤명희 윤후덕 이노근 이미경 이우현 이이재 이재오 이종훈 이채익 이학재 임수경 전정희

강길부 강은희 권성동 김관영 김기식 김명연 김상훈 김성태 김영우 김용익 김을동 김정록 김태원 김현국 도종환 문정림 민홍철 박대동 박민수 박성호 박윤옥 박홍근 변재일 설훈 신계륜 심윤조

강동원 강창일 권은희 김광림 김기준 김무성 김상희 김세연 김영주 김용태 김장실 김제남 김태호 김현미 나성린 류성결 문희상 박광온 박덕흠 박민식 박영선 박인숙 배재정 부좌현 손인춘 신정훈 심재권

심재철, 안철수, 양창영, 오제세, 원유철, 유성엽, 유의동, 윤관석, 윤호중, 이균현, 이미경, 이완영, 이윤석, 이재영, 이종진, 이찬열, 이한성, 임수경, 전정희, 정미경, 정수성, 정진후, 조경태, 조해진, 진영, 최봉홍, 하태경, 한정애, 홍철호, 황진하

심학봉, 안홍준, 여상규, 우상호, 원혜영, 유승민, 유인태, 윤명희, 윤후덕, 이노근, 이상일, 이우현, 이이재, 이재오, 이종훈, 이춘석, 이현승, 장병완, 전하진, 정병국, 정용기, 정청래, 조명철, 주승용, 최규성, 최재성, 한기호, 함진규, 황영철

안규백, 안효대, 염동열, 우원식, 유기홍, 유승희, 유일호, 윤영석, 이강후, 이만우, 이상직, 이운룡, 이인영, 이정현, 이주영, 이학영, 이현재, 전병헌, 정갑윤, 정성호, 정우택, 정호준, 조원진, 진선미, 최동익, 최재천, 한명숙, 홍익표, 황인자

안민석, 양승조, 오영식, 우윤근, 유대운, 유은혜, 유재중, 윤재옥, 이개호, 이명수, 이에리사, 이원욱, 이인제, 이종배, 이진복, 이학재, 인재근, 전순옥, 정문헌, 정세균, 정의화, 정희수, 조정식, 진성준, 최민희, 추미애, 한선교, 홍지만, 황주홍

**기권 의원(1인)**

김성찬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6인)**

**찬성 의원(223인)**

강기윤, 강석호, 강창희, 길정우, 김광진, 김동철, 김상훈, 김성찬, 김영록

강기정, 강석훈, 경대수, 김경협, 김기식, 김명연, 김상희, 김성태, 김영우

강길부, 강은희, 권성동, 김관영, 김기준, 김무성, 김성곤, 김세연, 김영주

강동원, 강창일, 권은희, 김광림, 김동완, 김상민, 김성주, 김승남, 김영환

김용남, 김윤덕, 김재원, 김태년, 김한표, 김희선, 노웅래, 문재인, 민현주, 박남춘, 박명재, 박병석, 박윤옥, 박홍근, 변재일, 설훈, 신계륜, 신의진, 심윤조, 안규백, 안효대, 염동열, 우원식, 유대운, 유승희, 유일호, 윤영석, 이강후, 이명수, 이완영, 이윤석, 이재영, 이종진, 이찬열, 이학재, 인재근, 전순옥, 정문헌, 정세균, 정진후, 조경태, 조해진, 진영, 최봉홍, 하태경

김용익, 김을동, 김정록, 김태원, 김현, 김희국, 도종환, 문정림, 민홍철, 박대동, 박민수, 박성호, 박인숙, 배재정, 부좌현, 손인춘, 신기남, 신정훈, 심재권, 안민석, 양승조, 오영식, 우윤근, 유성엽, 유은혜, 유재중, 윤관석, 윤재옥, 이개호, 이미경, 이우현, 이이재, 이재오, 이종훈, 이철우, 이한성, 임수경, 전정희, 정미경, 정수성, 정청래, 조명철, 주승용, 최규성, 최재성, 한기호

김용태, 김장실, 김제남, 김태호, 김현미, 나성린, 류성결, 문희상, 박광온, 박덕흠, 박민식, 박영선, 박주선, 백근기, 서상기, 송영근, 신동우, 신학용, 심재철, 안철수, 양창영, 오제세, 원유철, 유승민, 유의동, 윤관석, 윤호중, 이노근, 이상일, 이운룡, 이인영, 이주영, 이춘석, 이현승, 장병완, 전하진, 정병국, 정용기, 정호준, 조원진, 진선미, 최동익, 최재천, 한명숙

김우남, 김재경, 김춘진, 김태환, 김현숙, 남인순, 문대성, 민병두, 박기춘, 박맹우, 박범계, 박완주, 박혜자, 백재현, 서용교, 신경림, 신성범, 심상정, 심학봉, 안홍준, 여상규, 우상호, 유기홍, 유승우, 유인태, 윤명희, 윤후덕, 이만우, 이상직, 이원욱, 이인제, 이종배, 이진복, 이학영, 이현재, 전병헌, 정갑윤, 정성호, 정의화, 정희수, 조정식, 진성준, 최민희, 추미애, 한정애

함진규 홍익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주홍 황진하  
**기권 의원(3인)**  
 김민기 박원석 한선교

이명수 이미경 이상직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인제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익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7인)**

**찬성 의원(221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식 김기준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태 김우남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제남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나성린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류성결 문대성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신성범  
 신정훈 신학용 심윤조 심학봉  
 안규백 안민석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오제세 이상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개호 이균현 이노근 이만우

**기권 의원(6인)**

신동우 신의진 심재철 이상일  
 최봉홍 하대경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2인)**

**찬성 의원(230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제남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나성린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류성결 문대성 문재인  
 민홍철 박광온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박성호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균기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설훈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계륜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신정훈	신학용	심윤조	심재권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민석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장실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제남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김태환	김한표	김현	김현미
원유철	원혜영	유기홍	유대운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나성린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문대성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이강후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덕흠
이개호	이균현	이노근	이상우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이명수	이미경	이상일	이상직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영선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박주선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이인제	이재영	이정현	이종배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서용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미경	안규백	안민석	안철수	안홍준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청래	염동열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우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규성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재성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익표	이강후	이개호	이균현	이노근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인자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상일
황주홍	황진하			이상직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기권 의원(2인)**

김동완 이채익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1인)**

**찬성 의원(230인)**

이운룡	이인영	이정현	이주영	이철우
이인영	이인제	이종배	이진복	이춘석
이정현	이종배	이진복	이찬열	이학영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학영	
이철우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전병헌  
 전순옥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규성 최민희 최봉홍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익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인자

**기권 의원(1인)**

심상정

신동우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민석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일 이상직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일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기권 의원(8인)**

김제남 김춘진 박민수 박원석  
 서기호 심상정 정진후 홍익표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투표 의원(240인)**

**찬성 의원(232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한표 김현미 김현미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문대성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영선 박완주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8인)**

**찬성 의원(228인)**

강기윤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재경 김정록 김제남 김중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한표 김현미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결 문대성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혜자 박홍근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민석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유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병석 이상일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채익 이철우  
 이진복 이찬열 이한성 이현승  
 이춘석 이재근 임내현 임수경  
 이현재 인재근 전순옥 전정희  
 장병완 전병헌 정갑윤 정용기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청래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명철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익표 홍일표  
 황영철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5인)

찬성 의원(217인)

강기윤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윤덕 김용남 김용익  
 김용태 김제남 김중훈 김재경  
 김정록 김태원 김태호 김춘진  
 김한표 김현미 김현숙 김태환  
 김희선 김희국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결 문대성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홍철 박광온 박기춘  
 박대동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혜자 박홍근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변재일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영교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민석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유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병석 이상일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채익 이철우  
 이진복 이찬열 이한성 이현승  
 이춘석 이재근 임내현 임수경  
 이현재 인재근 전순옥 전정희  
 장병완 전병헌 정갑윤 정용기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청래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명철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윤영석 윤재욱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개호 이균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병석 이상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전병헌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홍익표  
 홍일표 황영철 황인자 황주홍

**기권 의원(8인)**

김기식 김민기 문재인 박민수  
 유인태 이상직 전순옥 한정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2인)**

**찬성 의원(232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제남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문대성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민석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개호 이균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일  
 이상직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익표 홍일표  
 황영철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1인)**

**찬성 의원(228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제남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나성린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결	문대성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덕흠	박맹우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혜자	박홍근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민석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일	이상직	이예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정태	조명철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익표	홍일표
황영철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기권 의원(3인)**  
 김기식    남인순    박지원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4인)**

**찬성 의원(230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제남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결	문대성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덕흠	박맹우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홍근	백군기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철	안민석	안효대	
안홍준	양승조	오영식	
여상규	염동열	원유철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우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우	유은혜	유의동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상일	이상직	이예리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정현	이종배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민석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용태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재경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김재원	김정록	김제남	김종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원유철	원혜영	유기홍	유대운	김태호	김태환	김한표	김현국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김현미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용래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노철래	도종환	류성결	문대성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이개호	이균현	이노근	이만우	민현주	민홍철	박광운	박기춘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일	박남춘	박대동	박덕흠	박맹우
이상직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박성호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이인영	이인제	이재영	이재오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균기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한성	서영교	서용교	설훈	손인춘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송영근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임수경	장병완	전병헌	전순옥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민석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조명철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규성	원유철	원혜영	유기홍	유대운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재성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홍익표	홍일표	황영철	황인자	윤재옥	윤호중	이강후	이개호
황주홍	황진하			이균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기권 의원(4인)**

김상민	김용남	나성린	백재현
-----	-----	-----	-----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2인)**

**찬성 의원(230인)**

강기윤	강기정	강동원	강석호	이인제	이종배	이진복	이춘석	이현재	장병완	전해철	정세균	정의화	정희수	조해진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이인제	이종배	이진복	이춘석	이현재	장병완	전해철	정세균	정의화	정희수	조해진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이인제	이종배	이진복	이춘석	이현재	장병완	전해철	정세균	정의화	정희수	조해진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이인제	이종배	이진복	이춘석	이현재	장병완	전해철	정세균	정의화	정희수	조해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이인제	이종배	이진복	이춘석	이현재	장병완	전해철	정세균	정의화	정희수	조해진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이인제	이종배	이진복	이춘석	이현재	장병완	전해철	정세균	정의화	정희수	조해진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이인제	이종배	이진복	이춘석	이현재	장병완	전해철	정세균	정의화	정희수	조해진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이인제	이종배	이진복	이춘석	이현재	장병완	전해철	정세균	정의화	정희수	조해진

진 영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익표 홍일표 황영철  
 황인자 황주홍  
**기권 의원(2인)**  
 백재현 최봉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호중 이강후 이개호  
 이균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일 이상직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익표  
 홍일표 황영철 황인자 황주홍  
**기권 의원(1인)**  
 윤영석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4인)**

**찬성 의원(233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제남  
 김중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문대성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덕흠  
 박맹우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홍근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민석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홍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1인)**

**찬성 의원(216인)**

강기윤 강기정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환 김영주  
 김용남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중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 회 선	김 회 국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영 민	노 응 래	노 철 래	도 중 환
류 성 결	문 정 립	문 희 상	민 병 두
민 현 주	민 홍 철	박 광 온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민 수	박 민 식
박 병 석	박 영 선	박 완 주	박 윤 옥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지 원	박 흥 근
배 재 정	백 군 기	백 재 현	변 재 일
부 좌 현	서 기 호	서 상 기	서 영 교
설 훈	손 인 춘	송 영 근	신 경 립
신 계 룬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의 진
신 정 훈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심 학 봉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철 수	안 흥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혜 영	유 기 흥	유 대 운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은 혜
유 의 동	유 인 태	유 일 호	유 재 중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재 옥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강 후
이 개 호	이 군 현	이 노 근	이 명 수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상 일	이 상 직
이에리사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원 옥	이 윤 석	이 이 재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재 영	이 재 오	이 정 현
이 종 배	이 종 진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한 성	이 현 승	이 현 재	인 재 근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전 병 현
전 순 옥	전 정 희	전 하 진	전 해 철
정 갑 윤	정 문 현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용 기	정 우 택	정 의 화
정 진 후	정 청 래	정 호 준	정 희 수
조 경 태	조 명 철	조 정 식	조 해 진
주 승 용	진 선 미	진 성 준	진 영
최 규 성	최 동 익	최 민 희	최 봉 흥
최 재 천	하 태 경	한 기 호	한 명 숙
한 선 교	함 진 규	홍 익 표	홍 일 표
황 영 철	황 인 자	황 주 흥	황 진 하

**반대 의원(1인)**

양 창 영

**기권 의원(4인)**

문 재 인    박 범 계    최 재 성    한 정 애  
 (나경원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투표

의원 221인, 찬성 의원 216인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0인)**

**찬성 의원(218인)**

장 기 윤	장 기 정	장 동 원	장 석 호
강 은 희	강 창 일	강 창 희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관 영
김 광 립	김 광 진	김 기 선	김 기 식
김 기 준	김 도 읍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민 기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성 곤	김 성 주
김 성 찬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영 환
김 용 남	김 용 태	김 우 남	김 윤 덕
김 재 경	김 정 록	김 종 훈	김 진 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김 현 미	김 현 숙	김 회 선	김 희 국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영 민	노 응 래
노 철 래	도 중 환	류 성 결	문 재 인
문 정 립	문 희 상	민 병 두	민 현 주
민 홍 철	박 광 온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민 수	박 민 식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영 선	박 완 주	박 원 석
박 윤 옥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지 원
박 흥 근	백 군 기	백 재 현	변 재 일
부 좌 현	서 기 호	서 상 기	서 영 교
설 훈	손 인 춘	송 영 근	신 경 립
신 계 룬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의 진
신 정 훈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심 학 봉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철 수	안 흥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양 창 영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혜 영	유 기 흥
유 대 운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은 혜	유 의 동	유 인 태	유 일 호
유 재 중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재 옥	윤 호 중	이 강 후
이 개 호	이 군 현	이 노 근	이 명 수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상 일	이 상 직
이에리사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원 옥	이 윤 석	이 이 재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재 영	이 재 오	이 정 현

이 종 배 이 종 진 이 종 훈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한 성 이 현 승 이 현 재  
 인 재 근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전 병 헌 전 순 옥 전 정 희 전 하 진  
 전 해 철 정 갑 윤 정 문 헌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용 기 정 우 택  
 정 의 화 정 진 후 정 청 래 정 호 준  
 정 희 수 조 경 태 조 명 철 조 정 식  
 조 해 진 주 승 용 진 선 미 진 성 준  
 진 영 최 규 성 최 동 익 최 민 희  
 최 재 성 최 재 천 하 태 경 한 기 호  
 한 명 숙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익 표 홍 일 표 황 영 철 황 인 자

**기권 의원(2인)**

문 대 성 최 봉 홍  
 (나경원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투표 의원 220인, 찬성 의원 218인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224인)**

**찬성 의원(223인)**

강 기 윤 강 기 정 강 동 원 강 석 호  
 강 석 훈 강 은 희 강 창 일 강 창 희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립 김 광 진  
 김 기 선 김 기 식 김 기 준 김 도 읍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민 기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상 회  
 김 성 곤 김 성 주 김 성 찬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영 환 김 용 남 김 용 익  
 김 용 태 김 우 남 김 윤 덕 김 을 동  
 김 재 경 김 정 록 김 종 훈 김 진 태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김 현 미  
 김 현 숙 김 희 국 나 경 원 나 성 립  
 남 인 순 노 영 민 노 웅 래 노 철 래  
 도 종 환 류 성 결 문 대 성 문 재 인  
 문 정 립 문 희 상 민 병 두 민 현 주  
 민 흥 철 박 광 온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덕 흙 박 민 수 박 민 식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영 선 박 완 주  
 박 원 석 박 윤 옥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지 원 박 홍 근 배 재 정 백 군 기  
 백 재 현 변 재 일 부 좌 현 서 기 호  
 서 상 기 서 영 교 설 훈 손 인 춘  
 송 영 근 신 경 립 신 계 룬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신 의 진 신 정 훈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심 학 봉 안 규 백 안 덕 수  
 안 철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양 창 영 염 동 열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혜 영 유기 홍 유 대 운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은 혜 유 의 동  
 유 인 태 유 일 호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재 옥 윤 호 중  
 이 강 후 이 개 호 이 군 현 이 노 근  
 이 명 수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상 일  
 이 상 직 이에 리 사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원 옥 이 윤 석 이 이 재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재 영 이 재 오  
 이 정 현 이 종 배 이 종 진 이 종 훈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한 성 이 현 승  
 이 현 재 인 재 근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전 병 헌 전 순 옥 전 정 희  
 전 하 진 전 해 철 정 갑 윤 정 문 헌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용 기  
 정 우 택 정 의 화 정 진 후 정 청 래  
 정 호 준 정 희 수 조 경 태 조 명 철  
 조 정 식 조 해 진 주 승 용 진 선 미  
 진 성 준 진 영 최 규 성 최 동 익  
 최 민 희 최 봉 홍 최 재 성 최 재 천  
 하 태 경 한 명 숙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익 표 홍 일 표 황 영 철  
 황 인 자 황 주 홍 황 진 하

**기권 의원(1인)**

유 재 중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9인)**

**찬성 의원(228인)**

강 기 윤 강 동 원 강 석 호 강 석 훈  
 강 은 희 강 창 일 강 창 희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립 김 광 진 김 기 선  
 김 기 식 김 기 준 김 도 읍 김 동 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재경
김정록	김제남	김종훈	김진태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문대성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덕흠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염동열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이강후	이개호	이근현	이노근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일
이상직	이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전병헌	전순욱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재성	최재천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익표	홍일표
황영철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기권 의원(1인)**

최봉홍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6인)**

**찬성 의원(222인)**

강기윤	강기정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재경	김정록
김제남	김종훈	김진태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문재인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덕흠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상기
서영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오제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해 영    유 기 홍    유 대 운    유 성 업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은 혜    유 의 동  
 유 인 태    유 일 호    유 재 중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재 옥  
 윤 호 중    이 강 후    이 개 호    이 노 근  
 이 명 수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상 일  
 이 상 직    이에리사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원 옥    이 윤 석    이 이 재  
 이 인 영    이 재 영    이 재 오    이 정 현  
 이 종 배    이 종 진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한 성    이 현 승    이 현 재    인 재 근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윤 석  
 전 병 현    전 순 옥    전 정 희    전 하 진  
 전 해 철    정 갑 윤    정 문 현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용 기    정 우 택  
 정 의 화    정 진 후    정 청 래    정 호 준  
 정 희 수    조 경 태    조 명 철    조 정 식  
 조 해 진    주 승 용    진 선 미    진 성 준  
 진    영    최 규 성    최 동 익    최 민 희  
 최 봉 홍    최 재 성    최 재 천    하 태 경  
 한 기 호    한 명 숙    한 선 교    함 진 규  
 홍 익 표    홍 일 표    황 영 철    황 인 자  
 황 주 홍    황 진 하

**기권 의원(4인)**

문 정 립    심 재 권    이 인 제    이 채 익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1인)**

**찬성 의원(230인)**

강 기 윤    강 기 정    강 동 원    강 석 호  
 강 석 훈    강 은 희    강 창 일    강 창 희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립    김 광 진  
 김 기 선    김 기 식    김 기 준    김 도 읍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민 기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성 곤    김 성 주    김 성 찬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영 환    김 용 남    김 용 익  
 김 용 태    김 우 남    김 윤 덕    김 을 동  
 김 재 경    김 정 록    김 제 남    김 종 훈  
 김 진 태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한 길    김 한 표

김    현    김 현 미    김 현 숙    김 회 선  
 김 회 국    나 경 원    나 성 립    남 인 순  
 노 영 민    노 웅 래    노 철 래    도 중 환  
 류 성 결    문 대 성    문 재 인    문 정 립  
 문 희 상    민 병 두    민 현 주    민 홍 철  
 박 광 온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덕 흙    박 민 수    박 민 식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성 호    박 영 선    박 완 주  
 박 원 석    박 윤 옥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지 원    박 혜 자    박 홍 근    배 재 정  
 백 군 기    백 재 현    변 재 일    부 좌 현  
 서 상 기    서 영 교    설    훈    손 인 춘  
 송 영 근    신 경 립    신 계 룡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신 의 진    신 정 훈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심 학 봉    안 규 백    안 덕 수  
 안 민 석    안 철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양 창 영    염 동 열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원 유 철    유 기 홍    유 승 우    유 은 혜  
 유 성 업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의 동    유 인 태    유 상 현    윤 영 석  
 윤 관 석    윤 명 희    윤 호 중    이 개 호  
 윤 재 옥    윤 호 중    이 명 수    이 미 경  
 이 군 현    이 노 근    이 상 직    이에리사  
 이 병 석    이 상 일    이 운 룡    이 원 옥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윤 석    이 이 재    이 정 현    이 종 배  
 이 재 영    이 재 오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종 진    이 종 훈    이 철 우    이 춘 석  
 이 찬 열    이 채 익    이 현 재    인 재 근  
 이 한 성    이 현 승    장 병 완    장 윤 석  
 임 내 현    임 수 경    전 정 희    전 하 진  
 전 병 현    전 순 옥    정 문 현    정 성 호  
 전 해 철    정 갑 윤    정 용 기    정 우 택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청 래    정 호 준  
 정 의 화    정 진 후    조 명 철    조 정 식  
 정 희 수    조 경 태    진 선 미    진 성 준  
 조 해 진    주 승 용    최 동 익    최 민 희  
 진    영    최 규 성    최 재 천    하 태 경  
 최 봉 홍    최 재 성    최 재 천    한 정 애  
 한 기 호    한 명 숙    한 선 교    황 인 자  
 함 진 규    홍 익 표    홍 일 표    황 인 자  
 황 주 홍    황 진 하

**기권 의원(1인)**

황 영 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247인)

찬성 의원(228인)

강 기 윤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 석 호	강 석 훈	강 은 희	강 창 일
강 창 희	경 대 수	권 은 희	권 垠 希
길 정 우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진
김 기 선	김 기 식	김 기 준	김 도 읍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민 기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성 곤	김 성 주	김 성 찬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영 환	김 용 익	김 용 태
김 우 남	김 윤 덕	김 재 경	김 정 록
김 제 남	김 제 식	김 진 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한 길	김 한 표	김 현	김 현 미
김 현 숙	김 회 선	김 회 국	나 경 원
나 성 린	남 인 순	노 영 민	노 웅 래
노 철 래	도 종 환	류 성 결	문 대 성
문 재 인	문 회 상	민 병 두	민 현 주
민 흥 철	박 광 온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맹 우	박 민 수	박 민 식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성 호	박 영 선
박 완 주	박 원 석	박 윤 옥	박 인 숙
박 지 원	박 혜 자	박 흥 근	배 재 정
백 군 기	백 재 현	변 재 일	부 좌 현
서 기 호	서 상 기	서 영 교	서 청 원
설 훈	손 인 춘	송 영 근	신 경 립
신 계 룬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신 의 진	신 정 훈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심 학 봉
안 규 백	안 덕 수	안 민 석	안 철 수
안 효 대	양 승 조	양 창 영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혜 영
유 기 흥	유 대 운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의 동
유 인 태	유 일 호	유 재 중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재 옥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강 후	이 개 호
이 균 현	이 만 우	이 명 수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상 직	이 석 현	이 언 주

이에리사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원 옥	이 윤 석	이 이 재	이 인 영
이 재 영	이 재 오	이 정 현	이 중 배
이 중 진	이 중 훈	이 주 영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현 승	이 현 재	인 재 근
임 내 현	장 병 완	장 윤 석	전 병 현
전 순 옥	전 정 희	전 하 진	전 해 철
정 문 현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용 기
정 우 택	정 의 화	정 진 후	정 청 래
정 호 준	정 희 수	조 경 태	조 명 철
조정 식	조 해 진	주 승 용	진 선 미
진 성 준	진 영	최 규 성	최 동 익
최 재 성	최 재 천	하 태 경	한 기 호
한 명 숙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종 학	홍 지 만
황 영 철	황 인 자	황 주 흥	황 진 하

반대 의원(4인)

권 성 동 김 용 남 김 중 훈 안 흥 준

기권 의원(15인)

김 광 립 김 학 용 문 정 립 박 덕 흙  
 박 주 선 서 용 교 이 노 근 이 인 제  
 이 진 복 이 한 성 임 수 경 정 미 경  
 최 민 희 최 봉 홍 추 미 애

(김성곤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변재일 의원 표결기 오작동. 실제 찬성 의원 228인, 기권 의원 15인임)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투표 의원(246인)

찬성 의원(243인)

강 기 윤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 석 호	강 석 훈	강 은 희	강 창 일
강 창 희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권 垠 希	길 정 우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립	김 광 진	김 기 선	김 기 식
김 기 준	김 도 읍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민 기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성 곤	김 성 주	김 성 찬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영 환	김 용 남	김 용 익
김 윤 덕	김 을 동	김 재 경	김 정 록
김 제 남	김 제 식	김 중 훈	김 진 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한 길	김 한 표

김 현 김 회 국 노 영 민 문 재 인 민 현 주 박 남 춘 박 민 수 박 성 호 박 원 석 박 지 원 백 군 기 서 기 호 서 청 원 신 경 립 신 성 범 심 상 정 심 학 봉 안 홍 준 여 상 규 우 상 호 원 혜 영 유 승 민 유 의 동 윤 관 석 윤 재 옥 이 개 호 이 명 수 이 상 직 이 완 영 이 윤 석 이 재 영 이 종 배 이 진 복 이 춘 석 이 현 승 임 수 경 전 순 옥 정 갑 윤 정 성 호 정 우 택 정 회 수 주 승 용 최 규 성 최 재 성 한 기 호

김 현 미 나 경 원 노 응 래 문 정 립 민 홍 철 박 대 동 박 민 식 박 수 현 박 윤 옥 박 혜 자 백 재 현 설 훈 신 계 룬 신 의 진 심 윤 조 안 규 백 안 효 대 염 동 열 우 원 식 유 기 홍 유 승 우 유 인 태 윤 명 희 윤 호 중 이 군 현 이 미 경 이 석 현 이 우 현 이 이 재 이 종 진 이 찬 열 이 학 영 이 현 재 장 병 완 전 정 희 정 문 현 정 세 균 정 진 후 조 명 철 진 선 미 최 동 익 최 재 천 한 명 숙

김 현 숙 나 성 립 도 종 환 문 희 상 박 광 온 박 덕 흠 박 범 계 박 영 선 박 인 숙 박 홍 근 변 재 일 서 영 교 손 인 춘 신 기 남 신 정 훈 심 재 권 안 덕 수 양 승 조 오 영 식 우 윤 근 유 대 운 유 승 희 윤 상 현 윤 후 덕 이 노 근 이 병 석 이 언 주 이 운 룡 이 인 영 이 종 훈 이 채 익 이 학 재 인 재 근 장 윤 석 전 하 진 정 미 경 정 수 성 정 청 래 조 정 식 진 성 준 최 민 희 최 미 애 추 미 애 한 선 교

김 회 선 남 인 순 류 성 결 민 병 두 박 기 춘 박 맹 우 박 병 석 박 완 주 박 주 선 배 재 정 부 좌 현 서 용 교 송 영 근 신 동 우 신 학 용 심 재 철 안 민 석 양 창 영 오 제 세 원 유 철 유 성 엽 유 은 혜 유 재 중 윤 영 석 이 강 후 이 만 우 이 에 리 사 이 원 옥 이 인 제 이 종 결 이 주 영 이 철 우 이 한 성 임 내 현 전 병 현 전 해 철 정 병 국 정 용 기 정 호 준 조 해 진 영 최 봉 흥 하 태 경 함 진 규

홍 익 표 황 인 자 기관 의원(3인) 문 대 성 조 경 태

홍 일 표 황 주 흥

홍 종 학 황 진 하 황 영 철

홍 지 만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9인)

찬성 의원(156인)

장 기 윤 장 창 회 김 기 선 김 무 성 김 성 태 김 윤 덕 김 제 식 김 태 년 김 한 표 나 경 원 도 종 환 민 병 두 박 맹 우 박 원 석 박 혜 자 서 상 기 신 경 립 신 성 범 심 윤 조 안 덕 수 양 창 영 여 상 규 우 윤 근 유 성 엽 유 재 중 윤 후 덕 이 만 우 이 언 주 이 운 룡 이 인 제 이 종 훈 이 채 익 이 학 재 인 재 근 장 윤 석 전 병 현 전 해 철 정 병 국 정 용 기 정 호 준 조 해 진 영 최 봉 흥 하 태 경

장 길 부 권 성 동 김 도 읍 김 상 민 김 세 연 김 을 동 김 종 훈 김 태 원 김 현 숙 나 성 립 류 성 결 민 현 주 박 민 식 박 윤 옥 백 군 기 설 훈 신 계 룬 심 재 철 안 민 석 안 홍 준 여 상 규 원 유 철 유 승 민 윤 관 석 이 강 후 이 명 수 이 에 리 사 이 원 옥 이 재 영 이 종 훈 이 채 익 이 한 성 장 윤 석 정 문 현 조 정 식 진 영

강 석 훈 권 은 희 김 동 철 김 성 주 김 영 우 김 정 룬 김 진 태 김 태 환 김 회 선 노 영 민 문 정 립 박 대 동 박 성 호 박 인 숙 백 재 현 손 인 춘 신 기 남 신 학 용 심 학 봉 안 홍 준 오 제 세 원 혜 영 유 의 동 윤 상 현 이 군 현 이 병 석 이 완 영 이 윤 석 이 정 현 이 주 영 이 철 우 이 현 승 전 병 현 정 병 국 정 진 후 조 해 진 최 봉 흥

강 은 희 김 관 영 김 명 연 김 성 찬 김 용 남 김 제 남 김 춘 진 김 학 용 김 회 국 노 응 래 문 희 상 박 덕 흠 박 수 현 박 주 선 서 기 호 송 영 근 신 동 우 심 상 정 안 규 백 안 효 대 우 상 호 유 기 홍 유 일 호 윤 재 옥 이 노 근 이 상 일 이 우 현 이 이 재 이 종 배 이 진 복 이 학 영 이 현 재 전 정 희 정 성 호 정 청 래 진 선 미 하 태 경

한 기 호    한 선 교    함 진 규    홍 일 표  
 홍 지 만    황 영 철    황 주 흥    황 진 하

**반대 의원(23인)**

강 기 정    강 동 원    김 기 식    김 상 희  
 김 영 주    김 용 익    김 우 남    민 흥 철  
 박 기 춘    박 민 수    박 완 주    변 재 일  
 서 영 교    양 승 조    유 대 운    윤 호 중  
 이 개 호    이 미 경    이 인 영    임 내 현  
 최 규 성    최 재 성    홍 종 학

**기권 의원(40인)**

강 창 일    김 경 협    김 기 준    김 민 기  
 김 성 곤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환  
 김    현    김 현 미    남 인 순    문 재 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영 선    박 지 원  
 박 흥 근    배 재 정    심 재 권    염 동 열  
 오 영 식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인 태  
 윤 명 희    이 상 직    이 중 결    이 춘 석  
 임 수 경    장 병 완    전 순 옥    정 세 균  
 정 호 준    조 경 태    주 승 용    최 민 희  
 추 미 애    한 명 숙    홍 익 표    황 인 자

(이중배 의원 착오로 문대성 의원석 표결기 조작. 실제 투표 의원 219인, 찬성 의원 156인, 기권 의원 40인임)

박 혜 자    백 군 기    백 재 현    변 재 일  
 서 기 호    서 상 기    서 영 교    설    훈  
 손 인 춘    송 영 근    신경 립    신 계 룬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신 의 진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윤 조    심 재 철  
 심 학 봉    안 규 백    안 덕 수    안 민 석  
 안 흥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양 창 영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혜 영    유 기 흥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의 동  
 유 일 호    유 재 중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재 옥    윤 호 중  
 이 강 후    이 개 호    이 균 현    이 노 근  
 이 만 우    이 명 수    이 병 석    이 상 일  
 이 상 직    이에리사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원 옥    이 윤 석    이 인 제  
 이 재 영    이 정 현    이 중 배    이 중 진  
 이 중 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우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한 성    이 현 승    이 현 재    임 내 현  
 장 병 완    장 윤 석    전 병 현    정 갑 윤  
 정 문 현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수 성  
 정 용 기    정 진 후    정 청 래    정 호 준  
 정 희 수    조 경 태    조 정 식    조 해 진  
 주 승 용    진 선 미    진 성 준    진    영  
 최 규 성    최 봉 흥    한 기 호    한 선 교  
 함 진 규    홍 일 표    홍 지 만    황 영 철  
 황 인 자    황 주 흥    황 진 하

**반대 의원(5인)**

김 기 식    김 영 주    민 흥 철    박 민 수  
 이 인 영

**기권 의원(32인)**

강 기 윤    김 기 준    김 민 기    김 상 희  
 김 승 남    김 현 미    남 인 순    박 수 현  
 박 영 선    박 흥 근    배 재 정    심 재 권  
 오 영 식    유 대 운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인 태    이 미 경    이 언 주    이 중 결  
 이 춘 석    인 재 근    임 수 경    전 순 옥  
 전 정 희    정 세 균    최 민 희    최 재 성  
 추 미 애    한 명 숙    홍 익 표    홍 종 학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0인)**

**찬성 의원(183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 석 훈  
 강 은 희    강 창 일    강 창 희    권 성 동  
 권 은 희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진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상 민    김 성 곤    김 성 주  
 김 성 찬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환    김 용 남    김 용 익  
 김 우 남    김 윤 덕    김 을 동    김 정 록  
 김 제 남    김 제 식    김 중 훈    김 진 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김 현 숙  
 김 회 선    김 회 국    나 경 원    나 성 린  
 노 영 민    노 옹 래    도 중 환    류 성 결  
 문 재 인    문 정 립    문 희 상    민 병 두  
 민 현 주    박 광 온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덕 흙    박 맹 우    박 민 식  
 박 병 석    박 성 호    박 완 주    박 원 석  
 박 윤 옥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지 원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6인)**

**찬성 의원(211인)**

강 기 윤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 석 훈      강 은 희      강 창 희      권 성 동  
 권 은 희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진  
 김 기 선      김 기 준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민 기      김 상 민  
 김 성 곤      김 성 주      김 성 찬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영 환      김 용 남      김 용 익  
 김 우 남      김 윤 덕      김 을 동      김 정 록  
 김 체 남      김 체 식      김 종 훈      김 진 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김 현 미  
 김 현 숙      김 회 선      김 회 국      나 경 원  
 나 성 린      남 인 순      노 영 민      노 응 래  
 도 종 환      류 성 결      문 재 인      문 정 립  
 문 회 상      민 병 두      민 현 주      민 홍 철  
 박 광 온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덕 흙      박 맹 우      박 민 식      박 병 석  
 박 성 호      박 수 현      박 영 선      박 완 주  
 박 원 석      박 윤 옥      박 인 숙      박 지 원  
 박 혜 자      박 홍 근      배 재 정      백 군 기  
 백 재 현      변 재 일      서 기 호      서 상 기  
 서 영 교      설    훈      손 인 춘      송 영 근  
 신 경 립      신 계 룬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신 의 진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심 학 봉  
 안 규 백      안 덕 수      안 민 석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양 창 영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혜 영      유 기 흥  
 유 대 운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의 동      유 인 태  
 유 일 호      유 재 중      윤 관 석      윤 명 회  
 윤 상 현      윤 재 옥      윤 후 덕      이 강 후  
 이 개 호      이 균 현      이 노 근      이 만 우  
 이 명 수      이 상 일      이 상 직      이 언 주  
 이에리사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윤 룡  
 이 원 옥      이 윤 석      이 이 재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재 영      이 정 현      이 종 결  
 이 종 배      이 종 진      이 종 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우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한 성      이 현 승  
 이 현 재      인 재 근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윤 석      전 병 현      전 순 옥  
 전 정 희      정 갑 윤      정 문 현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용 기

정 진 후      정 청 래      정 호 준      정 희 수  
 조 경 태      조 정 식      조 해 진      주 승 용  
 진 선 미      진 성 준      진    영      최 규 성  
 최 민 희      최 봉 홍      최 재 성      추 미 애  
 한 기 호      한 명 숙      한 선 교      함 진 규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중 학      홍 지 만  
 황 인 자      황 주 홍      황 진 하

**기권 의원(5인)**

장 창 일      김 기 식      박 민 수      박 주 선  
 이 미 경  
 (박민식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211인, 기권 의원 5인임)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9인)**

**찬성 의원(212인)**

강 기 윤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 석 훈      강 은 희      강 창 희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진      김 기 선      김 기 준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민 기  
 김 상 민      김 상 회      김 성 곤      김 성 주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세 연      김 승 남  
 김 용 익      김 우 남      김 영 주      김 영 환  
 김 정 록      김 체 남      김 윤 덕      김 을 동  
 김 진 태      김 춘 진      김 체 식      김 종 훈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현 미      김 회 선      김 한 표      김    현  
 남 인 순      노 영 민      김 회 국      나 경 원  
 류 성 결      문 재 인      노 응 래      도 종 환  
 민 병 두      민 현 주      문 정 립      문 회 상  
 민 홍 철      민 홍 철      박 광 온      박 덕 흙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병 석  
 박 맹 우      박 민 식      박 병 석      박 성 호  
 박 수 현      박 영 선      박 완 주      박 원 석  
 박 윤 옥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지 원  
 박 혜 자      박 홍 근      배 재 정      백 군 기  
 변 재 일      서 기 호      서 상 기      서 영 교  
 설    훈      손 인 춘      송 영 근      신 경 립  
 신 계 룬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신 의 진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심 학 봉      안 규 백  
 안 덕 수      안 민 석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양 창 영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원 유철	원 혜영	유 기홍	유 대운	박 남춘	박 대동	박 덕흠	박 맹우
유 성엽	유 승민	유 승우	유 승희	박 병석	박 성호	박 수현	박 완주
유 은혜	유 의동	유 인태	유 일호	박 윤옥	박 인숙	박 지원	박 혜자
유 재중	윤 관석	윤 명희	윤 상현	박 흥근	백 군기	서 상기	서 영교
윤 영석	윤 재옥	윤 후덕	이 강후	서 용교	설 훈	손 인춘	송 영근
이 개호	이 군현	이 노근	이 만우	신 경림	신 계륜	신 기남	신 동우
이 명수	이 미경	이 병석	이 상일	신 성범	신 의진	신 학용	심 상정
이 상직	이에리사	이 완영	이 우현	심 윤조	심 재철	심 학봉	안 규백
이 운룡	이 원욱	이 윤석	이 이재	안 덕수	안 민석	안 홍준	안 효대
이 인영	이 인제	이 재영	이 정현	양 승조	양 창영	여 상규	염 동열
이 종결	이 종배	이 종진	이 종훈	오 제세	우 상호	우 윤근	원 유철
이 주영	이 진복	이 찬열	이 철우	원 혜영	유 기홍	유 성엽	유 승민
이 춘석	이 학영	이 학재	이 한성	유 승우	유 승희	유 은혜	유 의동
이 현승	이 현재	인 재근	임 내현	유 일호	유 재중	윤 관석	윤 명희
임 수경	장 병완	장 윤석	전 병헌	윤 상현	윤 영석	윤 재옥	윤 후덕
전 순옥	전 정희	정 갑윤	정 문헌	이 강후	이 노근	이 만우	이 명수
정 병국	정 성호	정 세균	정 수성	이 병석	이 언주	이에리사	이 완영
정 용기	정 진후	정 청래	정 호준	이 우현	이 운룡	이 원욱	이 윤석
정 희수	조 정식	조 해진	주 승용	이 인영	이 재영	이 정현	이 종배
진 선미	진 성준	진 영	최 규성	이 종진	이 종훈	이 주영	이 진복
최 민희	최 봉홍	최 재성	추 미애	이 찬열	이 채익	이 철우	이 학영
한 기호	한 명숙	한 선교	함 진규	이 학재	이 한성	이 현승	이 현재
홍 익표	홍 일표	홍 중학	홍 지만	인 재근	임 내현	임 수경	장 병완
황 영철	황 인자	황 주홍	황 진하	장 윤석	전 병헌	전 정희	정 갑윤

**기권 의원(7인)**

강 창일	김 기식	김 현숙	나 성린
박 민수	백 재현	조 경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7인)**

**찬성 의원(179인)**

강 기윤	강 길부	강 동원	강 석호
강 석훈	강 은희	경 대수	권 성동
권 은희	김 관영	김 광진	김 기선
김 기식	김 동철	김 명연	김 무성
김 민기	김 상민	김 상희	김 성곤
김 성주	김 성찬	김 성태	김 세연
김 영록	김 영우	김 영주	김 우남
김 윤덕	김 을동	김 정록	김 제남
김 체식	김 진태	김 춘진	김 태년
김 태원	김 태환	김 학용	김 한표
김 현	김 현숙	김 회선	김 회국
나 경원	나 성린	노 영민	노 웅래
류 성결	문 정림	문 희상	민 병두
민 현주	민 홍철	박 광운	박 기춘

**반대 의원(3인)**

박 주선	이 미경	이 상직
------	------	------

**기권 의원(25인)**

강 기정	강 창일	김 기준	김 승남
김 영환	김 현미	남 인순	도 종환
문 재인	박 민수	박 민식	배 재정
심 재권	오 영식	유 대운	유 인태
이 개호	이 종결	이 춘석	전 순옥
최 재성	추 미애	홍 익표	홍 중학
황 주홍			

(이상직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179인, 반대 의원 3인임)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

**를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6인)**

**찬성 의원(198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권은희	김관영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희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우남	김을동	김정록
김제남	김제식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희선
김희국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덕흠	박맹우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후덕
이강후	이개호	이노근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직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재영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현승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정갑윤	정문헌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민희
최재성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홍익표	홍일표
홍중학	홍지만	황영철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반대 의원(1인)**

이현재

**기권 의원(7인)**

경대수	권성동	김윤덕	김현숙
신의진	유재중	최봉홍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8인)**

**찬성 의원(206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김관영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희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정록	김제남
김제식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덕흠	박맹우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오제세,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문정림  
 우상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박광온,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박덕흠, 박맹우, 박민수, 박민식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박성호,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후덕,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이강후,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직, 백재현, 서영교, 서용교, 설훈  
 이연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계륜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이인영, 이재영, 이정현, 이종걸,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안민석,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이현승,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원유철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전순옥, 원혜영,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전정희, 정갑윤, 정문헌, 정세균,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정수성, 정용기, 정진후, 정청래,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진선미, 윤재옥, 윤후덕, 이강후, 이개호  
 진성준, 진영, 최민희, 최봉홍, 이균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최재성,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이미경, 이상직, 이연주, 이에리사  
 한선교, 함진규, 홍익표, 홍일표,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황인자,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재영  
 황주홍, 황진하,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찬열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학재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현승,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정갑윤, 정문헌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민희  
 최봉홍, 최재성,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기권 의원(2인)**

김현미, 윤재옥

**○6·25 전사자유해의 발글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6인)**

**찬성 의원(203인)**

강기윤, 강길부, 강동원,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김관영,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정록, 김제남, 김제식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반대 의원(1인)**

문재인

**기권 의원(2인)**

강기정, 박병석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8인)**

류성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덕흠, 박맹우, 박민수, 박민식  
 박성호,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서영교, 서용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우상호, 우윤근, 우윤근, 원유철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이강후, 이개호  
 이만우, 이명수  
 이연주, 이에리사  
 이운룡, 이원욱  
 이인영, 이재영  
 이종배, 이종진  
 이진복, 이찬열  
 이학영, 이학재  
 인재근, 임내현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정갑윤, 정문헌  
 정용기, 정진후  
 정희수, 조경태  
 정희수, 조명철  
 조해진, 주승용  
 진영, 최민희  
 추미애, 한기호  
 함진규, 홍익표  
 홍지만, 황영철  
 황진하

**찬성 의원(199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김광진  
 김기선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정록 김제남 김제식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나경원  
 나성린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덕흠  
 박맹우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백근기 백재현  
 서영교 서용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오제세 이상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후덕  
 이강후 이개호 이균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직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재영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현승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정희 정갑윤  
 정문헌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해진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진영 주규성  
 최민희 최봉홍 최재성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기권 의원(9인)**

김기식 김기준 남인순 배재정  
 서상기 이춘석 전병헌 전순옥  
 홍익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7인)**

**찬성 의원(183인)**

강기정 강길부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권은희 김경협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윤덕 김제남 김제식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희국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홍철  
 박광온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덕흠 박맹우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근기 백재현 변재일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설훈  
 송영근 신경림 신기남 신성범  
 신의진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염동열 오영식  
 오제세 이상호 우윤근 원유철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완영  
 이윤석 이정현 이종훈 이채익  
 이한성 임수경 임용기 이명수  
 이미경 이상직 이석현

이 언 주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원 옥 이 윤 석 이 인 영 이 재 영  
 이 정 현 이 종 결 이 종 배 이 종 진  
 이 종 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한 성 이 현 승 인 재 근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윤 석  
 전 순 옥 전 정 희 정 문 현 정 미 경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용 기 정 진 후  
 정 청 래 조 경 태 조 명 철 조 정 식  
 조 해 진 진 선 미 진 성 준 진 영  
 최 규 성 최 민 희 최 봉 홍 최 재 성  
 추 미 애 하 태 경 한 기 호 한 명 숙  
 한 선 교 함 진 규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종 학 황 영 철 황 주 홍

**반대 의원(3인)**

권 성 동 박 성 호 이에리사

**기권 의원(11인)**

강 기 윤 김 상 훈 김 을 동 민 현 주  
 박 인 숙 박 주 선 손 인 춘 이 이 재  
 전 병 현 정 갑 윤 황 인 자

○생활체육진흥법안

**투표 의원(201인)**

**찬성 의원(196인)**

강 기 윤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 석 호 강 석 훈 강 은 희 강 창 일  
 권 은 희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진  
 김 기 선 김 기 식 김 기 준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민 기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성 곤 김 성 주  
 김 성 찬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영 환  
 김 용 남 김 용 익 김 윤 덕 김 을 동  
 김 제 남 김 제 식 김 진 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김 현 미 김 현 숙 김 희 국  
 나 경 원 나 성 린 남 인 순 노 영 민  
 노 응 래 도 종 환 류 성 결 문 재 인  
 문 정 립 문 희 상 민 병 두 민 현 주  
 민 흥 철 박 광 온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덕 흙 박 맹 우 박 민 수  
 박 민 식 박 병 석 박 성 호 박 수 현  
 박 완 주 박 원 석 박 윤 옥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지 원 박 혜 자 박 홍 근

배 재 정 백 군 기 백 재 현 변 재 일  
 서 상 기 서 영 교 서 용 교 설 훈  
 손 인 춘 송 영 근 신경 립 신 기 남  
 신 성 범 신 의 진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윤 조 심 재 권 심 학 봉 안 규 백  
 안 덕 수 안 민 석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양 창 영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원 유 철 유 기 홍 유 대 운 유 성 엽  
 유 승 우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의 동  
 유 인 태 유 재 중 윤 관 석 윤 명 회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재 옥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강 후 이 개 호 이 노 근  
 이 만 우 이 명 수 이 미 경 이 상 직  
 이 석 현 이 언 주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원 옥 이 윤 석 이 이 재  
 이 인 영 이 재 영 이 정 현 이 종 결  
 이 종 배 이 종 진 이 종 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성 이 현 승  
 인 재 근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윤 석 전 병 현 전 순 옥 전 정 희  
 정 갑 윤 정 문 현 정 세 균 정 수 성  
 조 경 태 조 명 철 조 정 식 조 해 진  
 진 선 미 진 성 준 진 영 최 규 성  
 최 민 희 최 재 성 추 미 애 한 기 호  
 한 명 숙 한 선 교 함 진 규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종 학 황 영 철 황 주 홍

**반대 의원(1인)**

이에리사

**기권 의원(4인)**

권 성 동 심 재 철 최 봉 홍 황 인 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1인)**

**찬성 의원(200인)**

강 기 윤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 석 호 강 석 훈 강 은 희 강 창 일  
 권 성 동 권 은 희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진 김 기 선 김 기 식 김 기 준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민 기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성 곤 김 성 주 김 성 찬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영 환	김 용 남	김 용 익
김 윤 덕	김 을 동	김 제 남	김 제 식
김 진 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김 현 미
김 현 숙	김 희 국	나 경 원	나 성 린
남 인 순	노 응 래	도 중 환	류 성 결
문 재 인	문 정 립	문 희 상	민 병 두
민 현 주	민 흥 철	박 광 온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덕 흙	박 맹 우
박 민 수	박 민 식	박 병 석	박 성 호
박 수 현	박 완 주	박 원 석	박 윤 옥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지 원	박 혜 자
박 흥 근	배 재 정	백 군 기	변 재 일
서 상 기	서 영 교	서 용 교	설 훈
손 인 춘	송 영 근	신 경 립	신 기 남
신 성 범	신 의 진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심 학 봉
안 규 백	안 덕 수	안 민 석	안 흥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양 창 영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원 유 철	유 기 흥	유 대 운
유 성 엽	유 승 우	유 승 회	유 은 혜
유 의 동	유 인 태	유 재 중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재 옥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강 후	이 개 호
이 노 근	이 만 우	이 명 수	이 미 경
이 상 직	이 석 현	이 언 주	이 완 영
이 운 룡	이 원 옥	이 윤 석	이 이 재
이 인 영	이 재 영	이 정 현	이 종 결
이 종 배	이 찬 열	이 종 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학 영	이 채 익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한 성
이 현 승	인 재 근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윤 석	전 병 현	전 순 옥
전 정 희	정 갑 윤	정 문 현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용 기	정 진 후	정 청 래
정 호 준	조 경 태	조 명 철	조 정 식
조 해 진	진 선 미	진 성 준	진 영
최 규 성	최 민 희	최 봉 흥	최 재 성
추 미 애	하 태 경	한 기 호	한 명 숙
한 선 교	함 진 규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종 학	황 영 철	황 인 자	황 주 흥

**기권 의원(1인)**

백 재 현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198인)**

**찬성 의원(196인)**

강 기 윤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 석 호	강 석 훈	강 은 희	강 창 일
권 성 동	권 은 희	김 경 협	김 광 진
김 기 선	김 기 식	김 기 준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민 기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성 곤
김 성 찬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영 환
김 용 남	김 용 익	김 윤 덕	김 을 동
김 제 남	김 제 식	김 진 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김 현 미	김 현 숙	김 희 국
나 경 원	나 성 린	남 인 순	노 영 민
노 응 래	도 중 환	류 성 결	문 재 인
문 정 립	문 희 상	민 병 두	민 현 주
민 흥 철	박 광 온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덕 흙	박 맹 우	박 민 식
박 병 석	박 성 호	박 수 현	박 완 주
박 원 석	박 윤 옥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지 원	박 혜 자	박 흥 근	배 재 정
백 군 기	백 재 현	변 재 일	서 영 교
서 용 교	설 훈	손 인 춘	송 영 근
신 경 립	신 기 남	신 성 범	신 의 진
신 학 용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안 흥 준	안 규 백	안 덕 수	안 민 석
여 상 규	안 효 대	양 승 조	양 창 영
염 동 열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원 유 철	유 기 흥	유 대 운
유 성 엽	유 승 우	유 승 회	유 은 혜
유 의 동	유 인 태	유 재 중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재 옥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강 후	이 개 호
이 노 근	이 만 우	이 명 수	이 미 경
이 상 직	이 석 현	이 언 주	이 완 영
이 운 룡	이 원 옥	이 윤 석	이 이 재
이 인 영	이 재 영	이 정 현	이 종 결
이 종 배	이 찬 열	이 종 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학 영	이 채 익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한 성
이 현 승	인 재 근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윤 석	전 병 현	전 순 옥
전 정 희	정 갑 윤	정 문 현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용 기	정 진 후	정 청 래
정 호 준	조 경 태	조 명 철	조 정 식
조 해 진	진 선 미	진 성 준	진 영
최 규 성	최 민 희	최 봉 흥	최 재 성
추 미 애	하 태 경	한 기 호	한 명 숙
한 선 교	함 진 규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종 학	황 영 철	황 인 자	황 주 흥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명철
조정식	조해진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규성	최민희	최봉홍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황영철	황인자	황주홍

**기권 의원(2인)**  
 김성주 심상정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재영	이정현
이종걸	이중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정갑윤	정문헌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명철
조정식	조해진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민희	최봉홍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황영철	황인자	황주홍

**기권 의원(2인)**  
 강길부 최규성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6인)

찬성 의원(204인)

강기윤	강기정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권성동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윤덕
김을동	김제남	김제식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희국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덕흠
박맹우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8인)

찬성 의원(204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권성동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윤덕	김을동	김제남	김제식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희국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기춘	박대동	박덕흠
박맹우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홍근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재영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현승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정갑윤	정문헌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명철	조정식	조해진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규성
최민희	최봉홍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홍익표	홍일표	홍중학
홍철호	황영철	황인자	황주홍

**기관 의원(4인)**  
 박남춘    박민수    박혜자    조경태

김용남	김용익	김윤덕	김을동
김제남	김제식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희국	나경원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덕흠	박맹우	박성호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서상기	서영교	설훈	손인춘
신경림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원유철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병석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재영	이정현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현승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전정희	정갑윤	정문헌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명철	조해진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규성	최민희	최봉홍	최재성
하태경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홍익표	홍일표	홍중학	홍철호
황영철	황인자	황주홍	

**기관 의원(16인)**  
 강창일    권은희    김기준    김상희  
 김영록    박민수    박병석    박영선  
 송영근    오영식    유승희    이미경  
 이상직    이인영    이종배    전순옥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9인)

찬성 의원(183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경대수
권성동	김경협	김관영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성곤	김성주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5인)

찬성 의원(161인)

강기윤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김관영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성곤	김성주	김성태	김승남
김영우	김영주	김용익	김윤덕
김을동	김제남	김제식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숙
나경원	노영민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덕흠
박맹우	박민식	박수현	박완주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홍근	백균기	변재일	서상기
서영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학용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제세	우상호
유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재영	이정현	이종배	이종훈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현승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윤석	전병헌	전정희	정갑윤
정문헌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명철
조해진	주승용	진성준	진영
최규성	최민희	최봉홍	최재성
하태경	한선교	함진규	홍익표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	황인자
황주홍			

반대 의원(4인)

김광진 박혜자 장병완 정진후

기권 의원(30인)

강기정	강동원	강창일	김경협
김동철	김상희	김세연	김영록
김영환	김희국	남인순	노용래
도중환	류성결	박기춘	박민수
박성호	박영선	박원석	심상정
오영식	유성엽	유승희	이개호
이상직	이종걸	이종진	전순옥
한명숙	홍종학		

(조해진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투표 의원 195인, 찬성 의원 161인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투표 의원(198인)

찬성 의원(198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윤덕	김을동
김제남	김제식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희국
나경원	남인순	노영민	노용래
도중환	류성결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덕흠	박맹우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서상기	서영교
서영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혜 영	유 기 흥	유 대 운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의 동	유 인 태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재 옥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강 후	이 개 호	이 노 근	이 만 우
이 명 수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상 직
이 석 현	이 언 주	이에리사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원 옥	이 윤 석
이 이 재	이 인 영	이 재 영	이 정 현
이 종 결	이 종 배	이 종 진	이 종 훈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우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한 성	이 헌 승
인 재 근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윤 석	전 병 헌	전 순 옥	전 정 희
정 갑 윤	정 문 헌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용 기	정 진 후	정 청 래	정 호 준
조 경 태	조 명 철	조 해 진	주 승 용
진 선 미	진 성 준	진 영	최 규 성
최 민 희	최 봉 흥	최 재 성	하 태 경
한 명 숙	한 선 교	함 진 규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종 학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인 자	황 주 흥		

(조해진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투표 의원 198인, 찬성 의원 198인임)

민 현 주	민 흥 철	박 광 온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덕 흙	박 민 식
박 병 석	박 성 호	박 수 현	박 영 선
박 완 주	박 원 석	박 윤 옥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지 원	박 혜 자	박 흥 근
백 군 기	백 재 현	변 재 일	서 상 기
서 영 교	서 용 교	설 훈	손 인 춘
송 영 근	신 경 립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신 의 진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심 학 봉
안 규 백	안 덕 수	안 민 석	안 흥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양 창 영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혜 영	유 기 흥
유 대 운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의 동	유 인 태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재 옥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강 후
이 개 호	이 노 근	이 만 우	이 명 수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상 직	이 석 현
이 언 주	이에리사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원 옥	이 윤 석	이 이 재
이 인 영	이 재 영	이 정 현	이 종 결
이 종 배	이 종 진	이 종 훈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한 성	이 헌 승
인 재 근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윤 석	전 병 헌	전 순 옥	전 정 희
정 갑 윤	정 문 헌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용 기	정 우 택	정 진 후	정 청 래
정 호 준	조 경 태	조 명 철	조 해 진
주 승 용	진 선 미	진 성 준	진 영
최 규 성	최 민 희	최 봉 흥	최 재 성
하 태 경	한 명 숙	한 선 교	함 진 규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종 학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인 자	황 주 흥	

**기권 의원(1인)**  
박 민 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4인)**

**찬성 의원(203인)**

강 기 윤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 석 호	강 석 훈	강 은 희	강 창 일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진	김 기 선	김 기 식
김 기 준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민 기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성 곤	김 성 주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영 환	김 용 익	김 윤 덕
김 을 동	김 제 남	김 제 식	김 종 태
김 진 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한 표	김 현	김 현 미
김 현 숙	김 희 국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영 민	노 응 래	도 종 환	류 성 결
문 재 인	문 정 립	문 회 상	민 병 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1인)**

**찬성 의원(197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석 호	강 석 훈
강 은 희	강 창 일	경 대 수	권 성 동



권은희 김기선 김동철 김상민 김성주 김영록 김용익 김제식 김태원 김현미 남인순 류성걸 민병두 박기춘 박맹우 박성호 박원석 박지원 변재일 서용교 신경림 신학용 심재철 안민석 양창영 오제세 원혜영 유승우 유인태 윤영석 이강후 이미경 이언주 이운룡 이인영 이종배 이찬열 이학재 임내현 전병헌 정문헌 정우택 조경태 진선민

김경협 김기식 김명연 김상훈 김성태 김영우 김윤덕 김종태 김태환 김현숙 노영민 문재인 박남춘 박민수 박수현 박윤옥 박홍근 서기호 신기남 심상봉 안홍준 여상규 우상호 유기홍 유승희 윤관석 이재영 이종진 이채익 이한성 임수경 전순옥 정세균 정진후 조명철 최봉홍

김관영 김기준 김무성 김상희 김세연 김영주 김을동 김춘진 김한표 김희국 노웅래 문정림 민홍철 박대동 박민식 박영선 박인숙 백군기 서상기 신동우 심윤조 안규백 안효대 염동열 우윤근 유대운 유은혜 윤명희 윤호중 이노근 이완영 이윤석 이종훈 이철우 이현승 장병완 전정희 정수성 정청래 조해진 최재성

김광진 김도읍 김민기 김성곤 김승남 김영환 김제남 김태년 김현 나경원 도종환 문희상 박광온 박덕흠 박병석 박완주 박주선 백재현 서영교 송영근 신의진 심재권 안덕수 양승조 오영식 원유철 유승민 유의동 윤상현 윤후덕 이만우 이석현 이우현 이이재 이진복 이춘석 인재근 장윤석 정갑윤 정용기 정호준 주승용 최규성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철호 황영철 황인자  
황주홍

**기권 의원(4인)**

김진태 박혜자 신성범 이명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1인)**

**찬성 의원(197인)**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김경협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윤덕  
김을동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현숙 김희국 나경원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덕흠 박맹우 박민수  
박영선 박병석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설훈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욱  
윤호중 이만우 이석현 이언주  
이병석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윤석 이종훈  
이철우 이현승 장병완 전정희  
정수성 정청래 조해진 최재성

이재영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현승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정갑윤  
 정문헌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해진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규성 최민희  
 최봉홍 최재성 하태경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철호 황영철 황인자  
 황주홍

**기권 의원(4인)**

김기준 서용교 안민석 조명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3인)**

**찬성 의원(189인)**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성동 김경협 김관영 김광진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환 김용익 김윤덕 김을동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희국 나경원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덕흠 박맹우 박민수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학봉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원유철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직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재영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현승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정갑윤  
 정문헌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명철 조해진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규성  
 최민희 최봉홍 최재성 하태경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홍익표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 황인자  
 황주홍

**반대 의원(2인)**

권은희 김성태

**기권 의원(12인)**

김기선 김영주 류성결 박민식  
 박영선 서용교 신의진 심재철  
 안민석 이종훈 이춘석 홍종학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

**률안(대안)**

**투표 의원(188인)**

**찬성 의원(103인)**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경대수  
 권성동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무성 김상훈 김성곤 김성태  
 김영우 김을동 김제식 김진태  
 김태원 김태환 김한표 김현숙  
 김희국 나경원 나성린 도종환  
 류성결 문정림 문희상 민현주  
 박덕흠 박민식 박성호 박윤옥  
 박인숙 박지원 박혜자 변재일  
 서상기 서용교 설훈 송영근  
 신경림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반대 의원(1인)**

송영근

(전병헌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188인, 기권 의원 없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1인)**

**찬성 의원(189인)**

강기정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성동
권垠希	김경협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윤덕	김을동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한표	김현미
김현숙	김희국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문재인	문희상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기춘	박남춘
박덕흠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백근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설훈	송영근
신경림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홍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윤관석	윤명희	윤재옥	윤후덕
이강후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상직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재영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해철	정문헌	정미경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명철
조해진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철호	황영철	황인자
황주홍			

**기권 의원(2인)**

김영록 박민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1인)**

**찬성 의원(191인)**

강기정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성동
권垠希	김경협	김관영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윤덕	김을동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희국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문재인	문희상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기춘	박남춘	박덕흠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홍근	배재정	백근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설훈	송영근
신경림	신기남	신동우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홍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윤후덕
이강후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상직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재영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진병헌	진순옥	진정희	전해철
정문헌	정미경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명철	조해진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홍익표	홍종학	홍철호
황영철	황인자	황주홍	

(박수현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박주선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191인, 기권 의원 없음)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설훈	송영근
신경림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홍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윤후덕	이강후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상직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재영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진병헌	진순옥	진정희
전해철	정문헌	정미경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명철
조해진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철호	황영철	황인자
황주홍			

기권 의원(1인)  
김기식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4인)

찬성 의원(193인)

강기정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윤덕	김을동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희국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기춘	박남춘	박덕흠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2인)

찬성 의원(178인)

강기정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기준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민기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성곤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찬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윤덕	김을동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진태
김춘진	김태원	김태환	김한표
김현	김현숙	김희국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현주	민홍철	박광운
박남춘	박덕흠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설훈	송영근	신경림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민석	안홍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대운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윤후덕	이강후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재영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이학재	이한성
이현승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윤석	전병헌	전순옥	전해철
정문헌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명철	조해진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홍익표
홍일표	홍중학	홍철호	황영철
황인자	황주홍		

**기권 의원(4인)**

박성호 서용교 안덕수 이춘석  
 (안덕수·진선미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  
 제 찬성 의원 178인, 기권 의원 4인임)

**찬성 의원(179인)**

강기정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김관영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윤덕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진태	김춘진	김태원	김태환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희국	나경원	나성린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현주	민홍철
박광운	박덕흠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설훈	송영근
신경림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홍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대운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윤후덕	이강후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재영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현승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윤석	전병헌	전순옥	전해철
정문헌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명철	조해진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홍익표
홍일표	홍중학	홍철호	황영철
황인자	황주홍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5인)**

황영철 황인자 황주홍  
**기권 의원(6인)**  
 權垠希 김경협 김을동 남인순  
 박남춘 박민수

전병헌 전순옥 전해철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명철  
 조해진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철호 황영철 황인자 황주홍  
**기권 의원(4인)**  
 김기식 우윤근 이개호 임내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0인)  
 찬성 의원(176인)**

강기정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權垠希	김경협	김관영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윤덕	김을동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진태	김춘진
김태원	김태환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희국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영선	박완주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설훈	송영근	신경림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홍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원유철	유대운	유승민	유승희
유의동	유인태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윤후덕	이강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재영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성
이현승	인재근	임수경	장윤석

**○대학도서관진흥법안  
 투표 의원(178인)  
 찬성 의원(174인)**

강기정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權垠希	김경협	김관영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윤덕
김을동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진태	김춘진	김태원	김태환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희국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덕흠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영선	박완주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설훈	송영근	신경림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민석	안홍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대운	유승민	유승희	유의동
유인태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윤후덕	이강후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미경	이에리사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재영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성 이현승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윤석 전병헌 전순옥  
 전해철 정문헌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명철 조해진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철호  
 황인자 황주홍

**기권 의원(4인)**

김성곤 심윤조 이명수 이완영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0인)**

**찬성 의원(175인)**

강기정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권垠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윤덕 김을동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진태 김춘진 김태원  
 김태환 김한표 김현미 김현미  
 김현숙 김희국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영선 박완주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용교 설훈 송영근 신경림  
 신기남 신동우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홍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대운 유승민

유승희 유의동 유인태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윤후덕  
 이강후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석현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옥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재영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성 이현승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윤석  
 전병헌 전순옥 전해철 정문헌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명철  
 조해진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함진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철호  
 황영철 황인자 황주홍

**기권 의원(5인)**

김기식 박덕흠 박민수 조경태  
 한선교

**○대한민국과 태국 간의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

**투표 의원(180인)**

**찬성 의원(180인)**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권垠희 김경협  
 김관영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을동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진태  
 김춘진 김태원 김태환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희국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덕흠  
 박맹우 박민수 박병석 박성호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설훈	송영근	신경림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대운	유승민	유승희
유의동	유인태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윤후덕	이강후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상직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운석
이이재	이인영	이재영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현승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윤석
전병헌	전해철	정문헌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명철
조해진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철호	황영철	황인자	황주홍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덕흠
박맹우	박민수	박병석	박성호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설훈	송영근	신경림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홍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대운
유승민	유승희	유의동	유인태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윤후덕	이강후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상직
이석현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운석	이이재
이인영	이재영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현승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전해철	정문헌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명철	조해진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함진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철호	황영철
황인자	황주홍		

**기권 의원(2인)**  
이춘석 한명숙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범죄인

인도에 관한 조약 비준동의안

투표 의원(184인)

찬성 의원(182인)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權垠希	김경협
김관영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을동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진태
김춘진	김태원	김태환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희국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현주	민홍철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투표 의원(185인)

찬성 의원(185인)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權垠希	김경협
김관영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을동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진태	김춘진	김태원	김태환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희국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현주
민홍철	박광운	박남춘	박대동
박덕흠	박맹우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설훈
송영근	신경림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홍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대운	유승민	유승희
유의동	유인태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윤후덕	이강후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상직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재영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전해철	정문헌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명철	조해진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철호	황영철	황인자

(민현주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185인, 기권 의원 없음)

**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투표 의원(181인)**

**찬성 의원(180인)**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권垠希	김경협
김관영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을동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진태	김춘진	김태원	김태환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희국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현주
민홍철	박광운	박남춘	박대동
박덕흠	박맹우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균기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설훈	송영근
신경림	신기남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홍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대운	유승민
유승희	유의동	유인태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윤후덕
이강후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상직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재영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진복	이채익	이학재	이철우
이헌승	인재근	임내현	이한성
장윤석	전병헌	전해철	장병완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문헌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우택
조명철	조해진	주승용	조경태
진성준	최봉홍	최원식	진선미
최재성	최원식	최재성	최재성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철호 황영철 황인자 황주홍  
**기권 의원(1인)**  
 김용익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현승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전해철  
 정문헌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정태 조명철 조해진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철호 황영철  
 황인자 황주홍

**기권 의원(3인)**

박맹우 안민석 이진복

**○북태평양 공해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투표 의원(185인)**

**찬성 의원(182인)**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권垠希 김경협  
 김관영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희 김성곤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을동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진태 김춘진 김태원  
 김태환 김한표 김현미 김현미  
 김현숙 김희국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현주 민홍철 박광운 박남춘  
 박대동 박덕흠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설훈  
 송영근 신경림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홍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대운 유승민 유승희 유의동  
 유인태 윤관석 윤명희 윤재옥  
 윤후덕 이강후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상직  
 이석현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재영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채익 이철우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문화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투표 의원(180인)**

**찬성 의원(179인)**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권垠希 김경협  
 김관영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을동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진태 김춘진 김태원 김태환  
 김한표 김현미 김현미 김현숙  
 김희국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현주  
 민홍철 박광운 박남춘 박대동  
 박덕흠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설훈 송영근  
 신경림 신기남 신동우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홍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대운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의 동    유 인 태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재 옥    윤 후 덕  
 이 강 후    이 개 호    이 노 근    이 만 우  
 이 명 수    이 미 경    이 상 직    이 석 현  
 이에리사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원 욱    이 윤 석    이 이 재    이 인 영  
 이 재 영    이 정 현    이 종 결    이 종 배  
 이 종 진    이 진 복    이 채 익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한 성  
 이 현 승    인 재 근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윤 석    전 병 현    전 해 철  
 정 문 현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용 기  
 정 우 택    정 진 후    정 청 래    조 경 태  
 조 명 철    주 승 용    진 선 미    진 성 준  
 최 봉 홍    최 원 식    최 재 성    추 미 애  
 하 태 경    한 기 호    한 선 교    함 진 규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중 학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인 자    황 주 홍

**기권 의원(1인)**

박 맹 우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9인)**

**찬성 의원(179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 석 호  
 강 석 훈    강 은 희    강 창 일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권 垠 希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진    김 기 선    김 기 식  
 김 기 준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민 기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성 곤    김 성 주    김 성 찬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용 익    김 을 동    김 제 남  
 김 제 식    김 종 태    김 진 태    김 춘 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태 흠    김 한 표  
 김    현    김 현 미    김 현 숙    김 회 선  
 김 희 국    나 경 원    나 성 린    남 인 순  
 노 영 민    도 중 환    류 성 결    문 재 인  
 문 정 립    문 희 상    민 현 주    민 홍 철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민 수    박 병 석    박 성 호  
 박 영 선    박 완 주    박 원 석    박 윤 욱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지 원    박 혜 자  
 박 흥 근    배 재 정    백 군 기    백 재 현  
 부 좌 현    서 기 호    서 상 기    서 용 교

설    훈    송 영 근    신 경 립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신 의 진    신 정 훈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심 학 봉    안 규 백    안 덕 수  
 안 민 석    안 홍 준    양 승 조    양 창 영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영 식    우 윤 근  
 원 해 영    유 대 운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의 동    유 인 태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재 욱    이 강 후    이 개 호  
 이 노 근    이 만 우    이 명 수    이 상 민  
 이 상 직    이에리사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원 욱    이 윤 석    이 이 재  
 이 인 영    이 재 영    이 정 현    이 종 배  
 이 종 진    이 종 훈    이 진 복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현 승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장 병 완  
 전 병 현    전 순 욱    전 해 철    전 해 철  
 정 수 성    정 용 기    정 우 택    정 진 후  
 정 청 래    정 호 준    조 경 태    조 명 철  
 조 해 진    주 승 용    진 선 미    진 성 준  
 최 봉 홍    최 원 식    추 미 애    하 태 경  
 한 기 호    한 명 숙    한 선 교    함 진 규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중 학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인 자    황 주 홍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1인)**

**찬성 의원(180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 석 호  
 강 석 훈    강 창 일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권 垠 希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진    김 기 선    김 기 식    김 기 준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민 기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성 곤    김 성 주  
 김 성 찬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영 환  
 김 용 익    김 을 동    김 제 남    김 제 식  
 김 중 태    김 진 태    김 춘 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태 흠    김 한 표    김    현  
 김 현 미    김 현 숙    김 회 선    김 희 국  
 나 경 원    나 성 린    남 인 순    노 영 민  
 도 중 환    류 성 결    문 재 인    문 정 립  
 민 현 주    민 홍 철    박 광 온    박 맹 우  
 박 덕 흠    박 성 호    박 영 선    박 영 선  
 박 민 수    박 병 석    박 성 호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설훈  
 송영근 신경립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홍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우윤근 원혜영  
 유대운 유승민 유승희 유의동  
 유인태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이강후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상민  
 이상직 이석현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재영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현승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전순옥  
 전해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명철 조해진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최봉홍 최원식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홍익표 홍일표 홍중학  
 홍철호 황영철 황인자 황주홍

**기권 의원(1인)**

임내현

(강석호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투표 의원 181인, 찬성 의원 180인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7인)**

**찬성 의원(176인)**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권垠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용익 김을동 김제남

김제식 김중태 김진태 김춘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도종환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현주 민홍철 박광운  
 박남춘 박대동 박덕흠 박맹우  
 박민수 박병석 박성호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영교 서용교 설훈  
 송영근 신경립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홍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우윤근 원혜영  
 유대운 유승민 유승희 유의동  
 유인태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이강후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상민  
 이상직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재영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현승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윤석  
 전병헌 전순옥 전해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명철 조해진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최봉홍  
 최원식 추미애 하태경 한선교  
 함진규 홍익표 홍일표 홍중학  
 홍철호 황영철 황인자 황주홍

**기권 의원(1인)**

한명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1인)**

**찬성 의원(84인)**

강길부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권垠희 김광진  
 김기선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상민 김상훈 김성주 김세연

김영록	김을동	김제식	김종태
김진태	김태환	김한표	김현
김현숙	김회선	나경원	남인순
류성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현주	박광온	박대동	박완주
박윤옥	박인숙	서영교	설훈
신경림	신의진	신학용	심윤조
심재권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홍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우윤근	유승민	유승희
윤관석	윤영석	윤재옥	이강후
이노근	이명수	이운룡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철우
이학재	이현승	인재근	장윤석
정수성	정용기	조해진	진성준
최원식	함진규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인자	황주홍

**반대 의원(42인)**

강동원	김기준	김민기	김상희
김성곤	김승남	김영우	김제남
김현미	김희국	도종환	박맹우
박민수	박성호	박원석	박주선
박지원	백재현	서용교	신기남
신동우	신정훈	심상정	양창영
원혜영	유대운	유의동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종걸
임수경	장병완	전병헌	정진후
조경태	주승용	진선미	한명숙
홍종학	홍철호		

**기권 의원(45인)**

강기정	강석훈	김관영	김기식
김성찬	김영주	김용익	김춘진
나성린	노영민	민홍철	박남춘
박덕흠	박영선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균기	부좌현	서기호
송영근	신성범	심재철	오영식
유은혜	유인태	윤명희	윤상현
이개호	이상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재영	이정현	이춘석
이학영	임내현	전순욱	전해철
정청래	정호준	조명철	최봉홍
하태경			

(유승희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84인, 기권 의원 45인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8인)**

**찬성 의원(155인)**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權垠希	김관영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동철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용익	김을동	김제남
김제식	김진태	김춘진	김태환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회선	김희국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도종환	류성걸
문재인	문희상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맹우
박병석	박성호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부좌현	서용교
설훈	송영근	신경림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오영식
우윤근	원혜영	유대운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이강후	이개호	이노근	이상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재영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진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현승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전순욱	전해철	정수성	정용기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명철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최봉홍	최원식	하태경	한명숙
함진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황인자	황주홍	

**기권 의원(3인)**

김종태 박민수 홍익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1인)

찬성 의원(123인)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창일
권은희	권垠希	김경협	김관영
김광진	김기식	김기준	김동철
김무성	김민기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용익	김제남
김춘진	김태환	김현	김현미
김희선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현주	민홍철	박광운
박남춘	박맹우	박민수	박병석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주선	박지원	박혜자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영교	설훈	신기남
신성범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안홍준
양승조	염동열	오영식	우윤근
원혜영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윤관석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이개호	이명수	이상민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재영	이정현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해철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해진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최민희
최원식	한명숙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철호	황주홍	

반대 의원(16인)

강은희	경대수	김종태	김진태
김태흠	박인숙	서용교	신동우
심학봉	이완영	이종진	이진복
정수성	정용기	한기호	황인자

기권 의원(22인)

김기선	김상민	김세연	김제식
김한표	김현숙	김희국	류성걸
박덕흠	박성호	송영근	심재철
안덕수	윤명희	이노근	이에리사

이종배 이헌승 조명철 하태경  
함진규 황영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4인)

찬성 의원(138인)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은희	권垠希	김관영	김기선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상민
김상훈	김성곤	김성주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용익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진태	김춘진	김태환	김태흠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나성린	노웅래
도종환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현주	민홍철	박광운	박남춘
박덕흠	박병석	박성호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혜자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영교
서용교	설훈	송영근	신기남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홍준	양승조	염동열	오영식
우윤근	원혜영	유대운	유승민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이개호	이노근	이명수	이상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운룡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재영	이정현
이종진	이진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헌승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전해철
정수성	정용기	정청래	정호준
조해진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최원식	하태경	한명숙
함진규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
황인자	황주홍		

반대 의원(8인)

김상희 신동우 유기홍 전순옥  
전정희 정진후 한기호 홍종학

기권 의원(18인)

김경협 김광진 김기식 김기준  
 김민기 남인순 노영민 박맹우  
 박민수 박수현 박영선 이원욱  
 이종배 임내현 조경태 조명철  
 최민희 홍익표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욱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개호  
 이균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전순욱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표 홍익표 홍일표  
 홍중학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출석 의원(272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권垠希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문대성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욱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개의 시 재석 의원(182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권垠希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용남 김용태  
 김우남 김장실 김재원 김정록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미 나성린 남인순 도종환  
 류성결 문대성 문정림 문희상



민 병 두 민 현 주 민 홍 철 박 광 온  
 박 대 동 박 덕 흠 박 명 재 박 민 식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성 호 박 영 선  
 박 원 석 박 윤 옥 박 인 숙 박 주 선  
 박 흥 근 배 재 정 백 군 기 백 재 현  
 변 재 일 부 좌 현 서 상 기 서 용 교  
 손 인 춘 송 영 근 송 호 창 신 경 립  
 신 계 룬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신 의 진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덕 수 안 민 석 안 철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양 창 영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원 유 철 유 기 홍 유 대 운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의 동 유 재 중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영 석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강 후  
 이 개 호 이 노 근 이 명 수 이 상 일  
 이 상 직 이 연 주 이 에 리 사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원 옥 이 이 재 이 인 영  
 이 장 우 이 재 영 이 정 현 이 종 배  
 이 종 진 이 종 훈 이 진 복 이 채 익  
 이 철 우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해 찬  
 이 현 승 이 현 재 임 내 현 장 병 완  
 전 병 현 전 순 옥 전 정 희 전 하 진  
 정 문 현 정 미 경 정 수 성 정 용 기  
 정 의 화 정 진 후 정 칭 래 정 희 수  
 조 명 철 조 원 진 조 정 식 조 해 진  
 주 승 용 진 성 준 진 영 최 민 희  
 최 봉 흥 최 원 식 최 재 천 추 미 애  
 한 명 숙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흥 익 표 흥 종 학 흥 철 호 황 영 철  
 황 인 자 황 진 하

○산회 시 재석 의원(51인)

강 기 정 강 석 호 강 은 희 권 은 희  
 김 기 준 김 도 읍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민 기 김 세 연 김 영 우 김 재 경  
 김 제 식 김 춘 진 김 태 호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나 경 원 문 정 립  
 민 현 주 박 완 주 박 윤 옥 부 좌 현  
 서 청 원 신 의 진 심 윤 조 심 재 철  
 심 학 봉 안 흥 준 염 동 열 유 기 준  
 유 대 운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의 동  
 윤 상 현 윤 재 옥 이 명 수 이 상 일  
 이 석 현 이 원 옥 이 이 재 이 인 제  
 이 재 영 이 종 훈 이 학 영 임 수 경

조 해 진 진 성 준 함 진 규  
**○청가 의원(13인)**  
 김 정 훈 류 지 영 문 병 호 민 병 주  
 박 대 출 송 광 호 신 경 민 은 수 미  
 장 하 나 주 호 영 홍 문 중 홍 영 표  
 홍 의 락

**○국회사무처**  
 사 무 총 장 박 형 준  
 입 법 차 장 구 기 성  
 의 사 국 장 장 대 섭

**○출석 국무위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 경 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 우 여  
 국 방 부 장 관 한 민 구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정 중 섭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김 중 덕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이 기 권  
 여 성 가 족 부 장 관 김 희 정  
 해 양 수 산 부 장 관 김 영 석

**○출석 정부위원**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최 재 유  
 외 교 부 제 1 차 관 조 태 용  
 법 무 부 차 관 김 주 현  
 농 립 축 산 식 품 부 차 관 여 인 흥  
 보 건 복 지 부 차 관 장 옥 주  
 환 경 부 차 관 정 연 만  
 방 송 통 신 위 원 회 부 위 원 장 허 원 제

**【보고사항】**

**○의장직무대리 지정**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정 갑 윤  
 3월 3일부터 의장 귀국 시까지  
 (2015. 3. 3)

**○간사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	박민식	새누리당	2015. 3. 3

**○상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법제사법	박민식	김재경	새누리당	2015. 3. 2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	김재경	박민식	새누리당	

○특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동북아역사왜곡 대책특별	.	박광온	새정치 민주연합	2015. 3. 2

○의안 제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2015. 2. 27 홍영표·박남춘·윤관석·김영록·이윤석·김상희·강동원·김제남·조정식·박완주·정호준·황주홍 의원 발의)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2015. 2. 27 홍영표·박남춘·윤관석·김영록·이윤석·김상희·강동원·조정식·백재현·정호준·황주홍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

(2015. 2. 27 김광진·김성곤·김우남·노영민·박남춘·박민수·부좌현·이에리사·이찬열·임수경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

(2015. 2. 27 김광진·김성곤·김승남·김우남·노영민·박민수·배재정·이에리사·이찬열·임수경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2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5. 2. 27 함진규·이현승·강기윤·전하진·이이재·박대출·경대수·안덕수·박창식·이장우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2015. 2. 27 정희수·이자스민·김태환·이명수·손인춘·이운룡·김태원·이노근·송영근·이한성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2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

(2015. 2. 27 김성곤·신경민·김태년·강동원·정성호·노응래·배재정·부좌현·이개호·심재권·김우남·박민수·박남춘·남인순·이해찬 의원 발의)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하겠음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진 의원 대표발의)

(2015. 2. 27 이종진·이채익·양창영·김을동·이노근·서상기·주호영·강석호·노철래·홍지만·윤재옥·장윤석·이철우·이이재·김상훈·정수성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2015. 2. 27 정희수·조명철·이명수·이철우·김상훈·최봉홍·이한성·김태환·김태원·이노근 의원 발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15. 2. 27 박성호·김태원·강기윤·이종배·박맹우·홍지만·박창식·이완영·이학재·박명재 의원 발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15. 2. 27 박성호·강기윤·이종배·박맹우·김태원·정미경·김제식·홍지만·박창식·이강후 의원 발의)

이상 4건 3월 2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이야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

(2015. 2. 27 강은희·강석호·함진규·이군현·최봉홍·한선교·김상훈·윤재옥·박대동·정수성·염동열·길정우·김한표·김동완·이진복·심윤조·이장우·이우현·박창식·김학용·안홍준·윤명희·박인숙·이상일·박대출·신경림 의원 발의)

3월 2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식 의원 대표발의)

(2015. 2. 27 김제식·류지영·배덕광·최봉홍·윤영석·박윤옥·김용남·김명연·이종훈·유대운·박남춘·이우현·이에리사·이이재·민현주 의원 발의)

3월 2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

(2015. 2. 27 양창영·최봉홍·신성범·김정록·정문현·박창식·황영철·주영순·경대수·이자스민 의원 발의)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

(2015. 2. 27 양창영·최봉홍·김정록·정문현·박창식·황영철·경대수·은수미·권성동·이자스민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2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2015. 2. 27 이채익·이노근·이우현·주호영·서용교·김한표·노철래·이종진·안홍준·박민식 의원 발의)

3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의진 의원 대표발의)

(2015. 3. 2 신의진·안홍준·강은희·이재영·이노근·윤명희·김명연·류지영·김한표·김태원 의원 발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운룡 의원 대표발의)

(2015. 3. 2 이운룡·한선교·정갑윤·유의동·민홍철·홍지만·정문헌·정희수·김성곤·이주영·이한성·이자스민 의원 발의)

이상 2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15. 3. 2 권성동·김진태·송영근·이철우·민현주·황인자·주영순·홍철호·유승우·김한표 의원 발의)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

(2015. 3. 2 박기춘·박지원·김관영·신학용·김민기·부좌현·주승용·이윤석·박수현·최규성·정성호·김성곤·김영주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

(2015. 3. 2 김영록·김승남·김춘진·박주선·신정훈·유성엽·이종걸·정호준·추미애·홍문표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나성린 의원 대표발의)

(2015. 3. 2 나성린·정문헌·류지영·강석호·김광립·박맹우·류성걸·이만우·박영재·주영순 의원 발의)

이상 3건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

(2015. 3. 2 황영철·정문헌·염동열·김승남·강동원·박덕흠·한기호·장윤석·이윤석·이철우·김춘진·이한성·김종태 의원 발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5. 3. 2 이찬열·김윤덕·전병헌·이개호·김광진·안규백·황주홍·이원욱·양승조·강동원 의원 발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5. 3. 2 이명수·김명연·이현승·황인자·정희수·김을동·이노근·김기선·신경림·문정림·김태원 의원 발의)

이상 3건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하겠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15. 3. 2 서영교·추미애·박홍근·정진후·이석현·김우남·전순옥·김관영·신경민·이찬열·김경협·박지원·임내현·서기호·최원식·이개호 의원 발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경숙) 선출안**

**특별감찰관 후보자(이광수) 추천안**

**특별감찰관 후보자(이석수) 추천안**

**특별감찰관 후보자(임수빈) 추천안**

(이상 4건 2015. 3. 3 의장 제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2015. 1. 12 정무위원장 제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15. 3. 3 국회운영위원장 제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2015. 3. 2 법제사법위원장 제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

(이상 2건 2015. 3. 3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제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 2015. 2. 1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이상 3건 2015. 2. 24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2015. 3. 3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 2015. 3. 2 국방위원장 제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4건 2015. 2.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장 제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 2015. 2. 24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5. 2. 26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5. 2. 23 여성가족위원장 제출)

**○의안 심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

(2013. 6. 14 류지영 · 문정림 · 박덕흠 · 홍지만 · 윤명희 · 민병주 · 조명철 · 손인춘 · 신경림 · 송영근 · 김장실 · 이운룡 · 이만우 의원 발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2013. 7. 24 정부 제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13. 8. 1 박성호 · 이현재 · 김영우 · 이에리사 · 배기운 · 안민석 · 유기준 · 김상훈 · 강기윤 · 심학봉 의원 발의)

(이상 3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3건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 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동 의원 대표발의)

(2013. 8. 20 박대동 · 정희수 · 김을동 · 이재영 · 정갑윤 · 박민수 · 주영순 · 윤명희 · 이만우 ·

강길부 · 민현주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정무위원장 보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성린 의원 대표발의)**

(2015. 1. 28 나성린 · 주영순 · 이현재 · 강석훈 · 정문헌 · 박덕흠 · 류성걸 · 박명재 · 유일호 · 이만우 · 김광림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기획재정위원장 보고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2012. 8. 24 정갑윤 · 김태원 · 박인숙 · 박기춘 · 이에리사 · 우원식 · 김태년 · 김기현 · 안효대 · 박대동 · 강길부 · 이채익 · 서상기 의원 발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2014. 6. 26 우상호 · 안규백 · 김승남 · 신경민 · 도종환 · 김을동 · 박홍근 · 김태년 · 이인영 · 이우현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2014. 7. 15 최민희 · 윤호중 · 이원욱 · 배재정 · 서영교 · 유은혜 · 남인순 · 김상희 · 신학용 · 백재현 · 문병호 · 전순옥 · 윤관석 · 정성호 · 박남춘 의원 발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2014. 10. 24 장병완 · 최민희 · 강기정 · 원혜영 · 전병헌 · 강창일 · 배재정 · 임내현 · 이개호 · 김동철 의원 발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

(2013. 6. 14 전병헌 · 진성준 · 배기운 · 이종걸 · 부좌현 · 이만우 · 박주선 · 신경민 · 김우남 · 윤호중 · 정성호 · 박민수 · 최동익 · 유승희 의원 발의)

(이상 5건 수정하여 의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12. 9. 14 정청래 · 김민기 · 유대운 · 이춘석 · 배기운 · 이찬열 · 이미경 · 홍종학 · 김재윤 · 강동원 · 김성곤 · 심재권 · 문병호 · 정성호 · 백재현 · 최원식 의원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12. 13 정부 제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 8. 11 정부 제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

(2014. 5. 15 전병헌·박주선·배재정·이찬열·배기운·부좌현·이상직·심상정·오영식·윤관석·전순옥·박남춘·김기준·박민수·이만우·김상희·백재현·유성엽 의원 발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2013. 10. 16 정부 제출)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진흥법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3. 11. 27 김도읍·유재중·이한성·이만우·김무성·서용교·김태흠·서병수·김상민·김정훈·홍문종·이주영·유일호·나성린·서영교·조정태·배재정·김춘진·강은희·손인춘·주영순·유승민·金永柱·정갑윤·함진규·이에리사·윤상현·심재철·박덕흠·황영철·박수현·안규백·민현주·김희선·이진복·이완구·박대출·김현숙·김관영·김성태·송영근·정희수·김종태·박민식 의원 발의)

(이상 6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1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보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13. 9. 11 박성호·정희수·이만우·유승우·이한성·장윤석·정문헌·강기윤·김성찬·김태원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14. 10. 17 안민석·서상기·박주선·이찬열·조정식·이개호·정진후·김태년·박홍근·설훈·박대출·서용교·윤재옥·안홍준·강은희·염동열·유은혜·윤관석·배재정·박해자·유인태·유기홍·도종환 의원 발의)

**생활체육진흥법안**(김장실 의원 대표발의)

(2014. 2. 7 김장실·서용교·유기준·김세연·유재중·나성린·홍문표·이현승·이진복·정의화·김태흠·김성찬·서병수·이완영·정희수·김진태·김무성·김미희·이우현·윤영석·이완구·김동철·박인숙·이주영·서상기·정문헌·김도읍·박대출·김광림·오제세·조현룡·김우남·김성태·김춘진·조원진·김민기·강석훈·박성호·김한표·

김태원·이상민·김영우·길정우·홍일표·김재윤·서영교·백재현·노철래·김희국·함진규·박덕흠·신성범·이이재·김상훈·권은희·이학재·우원식·이현재·임내현·강동원·한기호·김태년·원혜영·남경필·박영선·강창일·강길부·이윤석·박대동·홍영표·김승남·이낙연·김관영·김태호·박남춘·박주선·전정희·조해진·김영록·손인춘·박성호·신의진·안덕수·류지영·안홍준·유정복·진영·박창식·김재경·황진하·강은희·박명재·윤재옥·안민석·홍지만·신경림·이한성·최재성·한명숙·윤호중·김광진·이상직·윤후덕·이원욱·황주홍·심재권·최원식·임수경·민홍철·정청래·강기정·안규백·유승민·김정록·정우택·윤상현 의원 발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14. 3. 11 안민석·배재정·배기운·진선미·손인춘·정진후·김상희·유은혜·김태년·도종환·박홍근·박남춘·정성호·김광진·윤관석 의원 발의)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

(2012. 11. 7 조해진·조현룡·문대성·홍지만·김희정·남경필·이재영·金永柱·이우현·박상은·김한표 의원 발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군현 의원 대표발의)

(2013. 3. 11 이군현·김세연·김용태·김태원·김태흠·민병주·박성호·박민식·박인숙·신성범·여상규·유일호·유재중·한선교 의원 발의)

**대학도서관진흥법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2013. 3. 26 김세연·윤관석·서용교·유승우·박성호·이낙연·김우남·민병주·문대성·강은희·최봉홍·하태경·이철우·정진후·서상기 의원 발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9 김세연·이낙연·박성호·박창식·김상훈·강은희·김상민·조원진·송영근·김장실·정갑윤·윤관석 의원 발의)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

(2013. 5. 31 김희정 · 서병수 · 주호영 · 김태원 · 김무성 · 이학재 · 권은희 · 김장실 · 이균현 · 서용교 · 문정림 · 강은희 · 서상기 의원 발의)  
(이상 8건 수정하여 의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7 조정식 · 장병완 · 박혜자 · 박수현 · 변재일 · 최동익 · 배재정 · 최재성 · 이찬열 · 김현 · 강동원 의원 발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 발의)

(2012. 11. 7 조해진 · 조현룡 · 문대성 · 홍지만 · 김희정 · 남경필 · 이재영 · 金永柱 · 이우현 · 박상은 · 김한표 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 발의)

(2012. 9. 21 유승희 · 이미경 · 김윤덕 · 배재정 · 유대운 · 문병호 · 김승남 · 최동익 · 정성호 · 강동원 · 김장실 · 김성곤 · 박인숙 · 홍종학 · 김상희 · 인재근 · 김재운 · 유성엽 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 발의)

(2014. 6. 19 도종환 · 김우남 · 김관영 · 안규백 · 신기남 · 안민석 · 유은혜 · 김상희 · 김태년 · 부좌현 · 배재정 · 윤관석 · 김성주 · 임수경 · 유기홍 · 장하나 · 이미경 · 조정식 · 김광진 · 이목희 · 정진후 · 이인영 의원 발의)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6. 28 정부 제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013. 11. 18 박인숙 · 이주영 · 정우택 · 이만우 · 김세연 · 손인춘 · 윤명희 · 이에리사 · 강은희 · 서상기 의원 발의)

**국립대학 재정 · 회계법안**(민병주 의원 대표발의)

(2012. 7. 11 민병주 · 서상기 · 정두언 · 박성호 · 현영희 · 김세연 · 김한표 · 홍지만 · 유승민 · 김상민 의원 발의)

**기성회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

(2014. 2. 17 유은혜 · 원혜영 · 김상희 · 박홍근 · 정진후 · 홍영표 · 정세균 · 김윤덕 · 강기정 · 심상정 · 김현미 · 우원식 · 홍종학 · 한명숙 · 은수미 · 신경민 · 장하나 · 안민석 · 도종환 ·

김태년 · 윤관석 · 배기운 · 인재근 · 유기홍 · 임수경 의원 발의)

**국립대학법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

(2014. 7. 17 정진후 · 심상정 · 서기호 · 박원석 · 김제남 · 유기홍 · 장하나 · 안민석 · 박홍근 · 김현미 의원 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12. 21 정부 제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 발의)

(2013. 2. 1 정희수 · 이노근 · 정성호 · 이명수 · 김태원 · 강은희 · 박대동 · 최봉홍 · 주영순 · 윤명희 의원 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12. 21 정부 제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 발의)

(2013. 2. 1 정희수 · 정문헌 · 이노근 · 정성호 · 이명수 · 김태원 · 김동완 · 강은희 · 박대동 · 최봉홍 의원 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 발의)

(2013. 11. 27 김태원 · 이한성 · 박성호 · 강은희 · 김재원 · 이명수 · 강기운 · 김상민 · 문대성 · 윤명희 · 안홍준 · 박인숙 의원 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 발의)

(2014. 3. 14 박홍근 · 안민석 · 김상희 · 배기운 · 김광진 · 박주선 · 윤관석 · 박혜자 · 김성주 · 정진후 의원 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 발의)

(2014. 5. 20 부좌현 · 김상희 · 김춘진 · 박홍근 · 서기호 · 오영식 · 전순옥 · 전정희 · 정성호 · 황주홍 의원 발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 의원 대표발의)

(2013. 3. 14 박혜자 · 유은혜 · 김동철 · 유기홍 · 김승남 · 김태년 · 유성엽 · 박인숙 · 이석현 · 박홍근 · 정성호 · 박주선 · 강기정 · 우원식 의원 발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2014. 2. 24 김윤덕 · 박주선 · 최규성 · 배기운 · 김춘진 · 박민수 · 이원욱 · 정세균 · 김성주 ·

이상직 의원 발의)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2014. 3. 14 김윤덕·강기정·박홍근·배기운·강동원·조정식·홍의락·최민희·박민수·김관영 의원 발의)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2014. 3. 14 김윤덕·강기정·박홍근·배기운·강동원·조정식·홍의락·최민희·박민수·김관영 의원 발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2013. 7. 12 이학재·손인춘·김장실·박인숙·주호영·이만우·강은희·김세연·유승우·이에리사 의원 발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

(2013. 9. 3 정진후·서기호·박원석·김제남·심상정·김용익·배재정·은수미·장하나·박홍근 의원 발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9. 27 정부 제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 의원 대표발의)

(2014. 1. 2 박혜자·강기정·이낙연·김성곤·박지원·정진후·김승남·오병윤·우윤근·도종환·이용섭·임내현·박홍근·박주선·김영록·우원식 의원 발의)

(이상 23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33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고

**대한민국과 태국 간의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

(2014. 4. 9 정부 제출)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범죄인 인도에 관한 조약 비준동의안**

(2014. 4. 9 정부 제출)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2014. 7. 10 정부 제출)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2014. 7. 10 정부 제출)

**북태평양 공해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2014. 10. 17 정부 제출)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문화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2014. 6. 5 정부 제출)

(이상 6건 원안대로 의결)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4 양창영·문대성·민현주·이자스민·원혜영·서용교·안홍준·이이재·김정록·이에리사·최봉홍 의원 발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이상 7건 외교통일위원장 보고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 12. 30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손인춘 의원 대표발의)

(2014. 7. 7 손인춘·김상민·문대성·정희수·함진규·김을동·이자스민·윤명희·황인자·이진복 의원 발의)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손인춘 의원 대표발의)

(2014. 10. 29 손인춘·정희수·김종태·윤명희·안규백·송영근·이강후·이진복·장윤석·황인자 의원 발의)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근 의원 대표발의)

(2014. 12. 24 송영근·류지영·정희수·주호영·조명철·김성찬·권성동·김상훈·강은희·정갑윤 의원 발의)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 12. 8 정부 제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 12. 4 정부 제출)

(이상 5건 수정하여 의결)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2014. 9. 23 정희수·박명재·김상훈·이한성·이노근·유승민·김태환·심학봉·이명수·송영근·박맹우 의원 발의)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11 신경민 · 심재권 · 윤관석 · 최민희 · 강창일 · 윤호중 · 추미애 · 인재근 · 김승남 · 박남춘 의원 발의)

(이상 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손인춘 의원 대표 발의)

(2014. 11. 11 손인춘 · 윤명희 · 송영근 · 이강후 · 이진복 · 장윤석 · 황인자 · 정희수 · 심윤조 · 김장실 의원 발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 12. 26 정부 제출)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 발의)

(2012. 9. 10 한기호 · 정희수 · 정문헌 · 유승민 · 송영근 · 김진태 · 김세연 · 김용태 · 김성찬 · 조현룡 의원 발의)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손인춘 의원 대표 발의)

(2014. 11. 11 손인춘 · 윤명희 · 송영근 · 이강후 · 이진복 · 장윤석 · 황인자 · 정희수 · 심윤조 · 김장실 의원 발의)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 12. 26 정부 제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군기 의원 대표발의)

(2014. 8. 22 백군기 · 한기호 · 송영근 · 윤후덕 · 김태년 · 이원욱 · 김경협 · 송호창 · 윤호중 · 백재현 · 김광진 · 민홍철 · 손인춘 · 김성찬 의원 발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2014. 11. 7 김성찬 · 송영근 · 홍철호 · 김태원 · 주영순 · 배덕광 · 이현재 · 박대출 · 박맹우 · 박윤옥 · 김기선 의원 발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 12. 3 정부 제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군기 의원 대표발의)

(2015. 1. 19 백군기 · 손인춘 · 부좌현 · 한기호 · 송영근 · 윤후덕 · 김성찬 · 이찬열 · 신경민 · 김광진 의원 발의)

(이상 9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7건 국방위원장 보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4. 7. 11 강창일 · 박홍근 · 이찬열 · 강기정 · 부좌현 · 윤관석 · 주승용 · 김광진 · 박남춘 · 윤호중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 발의)

(2013. 9. 23 정성호 · 이한성 · 남인순 · 박원석 · 최민희 · 김재운 · 백군기 · 진선미 · 임수경 · 백재현 의원 발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 발의)

(2014. 5. 14 박기춘 · 이윤석 · 김민기 · 박수현 · 부좌현 · 김관영 · 한명숙 · 문희상 · 박지원 · 임내현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13. 9. 23 정성호 · 이한성 · 남인순 · 박원석 · 최민희 · 김재운 · 백군기 · 진선미 · 임수경 · 백재현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

(2014. 5. 14 박기춘 · 박수현 · 김민기 · 부좌현 · 이윤석 · 문희상 · 김관영 · 한명숙 · 박지원 · 임내현 의원 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 발의)

(2014. 5. 14 박기춘 · 박수현 · 김민기 · 부좌현 · 이윤석 · 문희상 · 김관영 · 한명숙 · 박지원 · 임내현 의원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대운 의원 대표 발의)

(2014. 8. 1 유대운 · 김재운 · 임수경 · 백재현 · 민홍철 · 홍의락 · 김현미 · 강동원 · 박범계 · 김기준 · 노웅래 의원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金永柱 의원 대표 발의)

(2012. 6. 22 金永柱 · 이인제 · 문정림 · 이낙연 · 오제세 · 문대성 · 박덕흠 · 이명수 · 성완중 · 박대출 · 김성태 · 신학용 · 박남춘 · 주승용 의원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 발의)

(2012. 6. 28 이상민 · 문병호 · 김기준 · 정성호 · 김광진 · 오제세 · 노영민 · 윤후덕 · 박수현 · 홍영표 · 박남춘 의원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2014. 10. 31 박남춘·임수경·유대운·김민기·노웅래·정청래·진선미·김현·전병헌·서영교 의원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2014. 10. 2 백재현·배재정·김상희·김재윤·정청래·유기홍·진선미·도종환·문희상·유대운 의원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유대운 의원 대표발의)

(2014. 8. 1 유대운·김재윤·임수경·백재현·민홍철·홍의락·김현미·강동원·김기준·박범계·노웅래 의원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 6. 11 정부 제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2013. 11. 29 김태원·정희수·이한성·김기선·문대성·박성호·이낙연·이종진·안효대·김태흠 의원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

(2013. 2. 12 김현·김태년·이석현·이찬열·백재현·김용익·문희상·이해찬·유대운·박남춘 의원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3. 2. 5 유승희·강동원·김윤덕·김한길·노영민·노웅래·도종환·박완주·박홍근·배재정·설훈·신경민·윤관석·이목희·이인영·인재근·장병완·전병헌·정세균·최규성·최민희·최재천 의원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2013. 2. 5 박남춘·안민석·백재현·양승조·윤관석·전해철·서영교·김재윤·홍종학·김현 의원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2013. 2. 5 백재현·박남춘·김영록·추미애·이찬열·정성호·우윤근·김민기·유대운·원혜영·양승조 의원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

(2012. 8. 24 김성곤·박기춘·김영록·배기운·김재윤·김춘진·우윤근·정세균·정성호·김성주·주승용 의원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

(2012. 7. 10 이명수·김태흠·박완주·이윤석·김을동·성완중·문정림·김동완·金永柱·박성호 의원 발의)

(이상 19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이상 20건 안전행정위원장 보고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4. 10. 31 김우남·신정훈·최규성·김춘진·조정식·김영록·부좌현·이윤석·조정태·김성곤·이석현·김승남 의원 발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6 김춘진·홍문표·김우남·박범계·배재정·김윤덕·김경협·이찬열·김영록·최규성 의원 발의)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배기운 의원 대표발의)

(2013. 10. 7 배기운·김광진·김영록·김윤덕·김동철·박홍근·조정식·이학영·강기정·장병완·이종걸 의원 발의)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배기운 의원 대표발의)

(2013. 10. 7 배기운·김광진·김영록·김윤덕·김동철·박홍근·조정식·이학영·강기정·장병완·이종걸 의원 발의)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

(2014. 5. 29 안효대·이노근·이명수·염동열·박상은·이철우·이장우·이상일·정수성·윤영석 의원 발의)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

(2014. 4. 30 안효대·이노근·이명수·염동열·이철우·박상은·조해진·신의진·안덕수·신경림 의원 발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

(2014. 5. 29 안효대·이노근·이명수·염동열·조현룡·이자스민·심윤조·김태원·이장우·이상일 의원 발의)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배기운 의원 대표발의)

(2013. 10. 7 배기운·김광진·김영록·김윤덕·김동철·박홍근·조정식·이학영·강기정·장병완·이종걸 의원 발의)

(이상 8건 원안대로 의결)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 9. 24 정부 제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 7. 3 정부 제출)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황영철 의원 대표발의)

(2013. 5. 29 황영철 · 김성태 · 윤명희 · 손인춘 · 박덕흠 · 윤재옥 · 김정록 · 강은희 · 김진태 · 유승우 · 김우남 의원 발의)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 발의)**

(2014. 4. 25 강석호 · 정갑윤 · 전하진 · 권은희 · 이노근 · 나성린 · 이학재 · 김진태 · 황영철 · 서상기 의원 발의)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 8. 29 정부 제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

(2014. 6. 20 김영록 · 강기정 · 김동철 · 김성곤 · 김우남 · 김춘진 · 박주선 · 박지원 · 박홍근 · 안규백 · 유성엽 · 이윤석 · 이종걸 · 장병완 · 주승용 · 최규성 · 황주홍 의원 발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0 김춘진 · 박민수 · 윤관석 · 김우남 · 김영록 · 이윤석 · 이낙연 · 김성곤 · 김승남 · 박지원 의원 발의)

(이상 7건 수정하여 의결)

**흙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 발의)**

(2013. 3. 26 김춘진 · 김영록 · 홍문표 · 강기정 · 이낙연 · 김우남 · 윤명희 · 윤호중 · 안규백 · 김기선 의원 발의)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0 김춘진 · 박범계 · 배재정 · 김윤덕 · 김영록 · 박민수 · 이찬열 · 김경협 · 김우남 · 홍문표 의원 발의)

(이상 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 발의)**

(2013. 11. 14 김우남 · 김영록 · 조정식 · 김상희 · 이찬열 · 장하나 · 강기정 · 홍문표 · 최원식 · 김종태 · 김춘진 의원 발의)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6 윤명희 · 강석훈 · 김춘진 · 김영록 · 김한표 · 정문헌 · 최봉홍 · 金永柱 · 홍지만 · 정희수 의원 발의)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 발의)**

(2014. 9. 29 윤명희 · 김우남 · 황주홍 · 박윤옥 · 안효대 · 류지영 · 경대수 · 홍문표 · 김종태 · 김명연 의원 발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

(2013. 7. 16 안효대 · 이노근 · 강석호 · 김재경 · 박인숙 · 이재영 · 이철우 · 김정록 · 김용태 · 윤진식 · 염동열 · 신의진 의원 발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

(2014. 3. 6 윤명희 · 하태경 · 홍문표 · 이만우 · 김상훈 · 김춘진 · 김영록 · 정희수 · 강기윤 · 김종태 의원 발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

(2014. 4. 1 윤명희 · 하태경 · 홍문표 · 이만우 · 김상훈 · 김춘진 · 정희수 · 강기윤 · 경대수 · 김종태 의원 발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배기운 의원 대표발의)**

(2013. 9. 30 배기운 · 김영록 · 추미애 · 이종걸 · 정의화 · 김춘진 · 김동철 · 박주선 · 김승남 · 김관영 · 안규백 · 양승조 · 전정희 의원 발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13. 10. 15 우원식 · 김우남 · 윤호중 · 김성곤 · 홍의락 · 부좌현 · 김기준 · 최원식 · 배기운 · 최규성 의원 발의)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배기운 의원 대표 발의)**

(2013. 10. 7 배기운 · 김광진 · 김영록 · 김윤덕 · 김동철 · 박홍근 · 조정식 · 이학영 · 강기정 · 장병완 · 이종걸 의원 발의)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 10. 28 정부 제출)

(이상 10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7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장 보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

(2014. 9. 29 이명수 · 김한표 · 황인자 · 박윤옥 · 이종진 · 김명연 · 이채익 · 문정림 · 윤명희 · 이종배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

(2014. 9. 25 박윤옥 · 김정록 · 배덕광 · 양창영 · 염동열 · 윤명희 · 이명수 · 이종배 · 정문헌 · 함진규 의원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4. 9. 26 남인순 · 정성호 · 최동익 · 인재근 · 정청래 · 이학영 · 이목희 · 박남춘 · 윤후덕 · 부좌현 · 윤관석 · 김성곤 · 박민수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

(2014. 2. 28 남인순 · 박완주 · 김성곤 · 유기홍 · 김재윤 · 박남춘 · 이목희 · 정진후 · 송호창 · 박홍근 · 윤후덕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

(2014. 3. 12 남인순 · 장하나 · 안민석 · 박민수 · 진선미 · 유기홍 · 김윤덕 · 김기준 · 김기식 · 안철수 · 우원식 · 최민희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 발의)

(2013. 3. 20 최동익 · 김용익 · 최민희 · 김성주 · 유대운 · 민홍철 · 전정희 · 배기운 · 홍영표 · 한명숙 · 백군기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지만 의원 대표 발의)

(2014. 4. 1 홍지만 · 강석훈 · 김기선 · 송영근 · 나성린 · 민병주 · 박인숙 · 신동우 · 이완영 · 김명연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

(2014. 6. 27 남인순 · 장하나 · 조정식 · 김성곤 · 정진후 · 서기호 · 안규백 · 추미애 · 서영교 · 이원옥 · 임수경 · 박홍근 · 이목희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 발의)

(2014. 8. 1 문정림 · 이명수 · 김명연 · 강기윤 · 이만우 · 안홍준 · 염동열 · 권성동 · 홍지만 · 이완영 · 김상민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 발의)

(2014. 8. 5 최동익 · 김상희 · 윤호중 · 서영교 ·

박남춘 · 이상민 · 원혜영 · 김재윤 · 민홍철 · 안홍준 · 이해찬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 의원 대표 발의)

(2014. 5. 16 김현숙 · 문대성 · 김한표 · 이한성 · 박인숙 · 홍지만 · 정희수 · 김정록 · 안종범 · 정의화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 의원 대표 발의)

(2015. 2. 2 김용익 · 남인순 · 장하나 · 진선미 · 김성주 · 박홍근 · 윤관석 · 박혜자 · 양승조 · 최동익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 의원 대표 발의)

(2015. 2. 4 김현숙 · 김재원 · 민병주 · 김학용 · 윤명희 · 강은희 · 황인자 · 이만우 · 이에리사 · 강기윤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

(2015. 2. 6 남인순 · 장하나 · 김용익 · 정성호 · 진선미 · 박혜자 · 부좌현 · 전정희 · 윤관석 · 김성주 · 유대운 · 박홍근 · 김현미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 발의)

(2015. 1. 15 김영록 · 김승남 · 김종태 · 박주선 · 신정훈 · 유성엽 · 임수경 · 정호준 · 추미애 · 홍익표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 발의)

(2015. 1. 16 신학용 · 정성호 · 이찬열 · 이미경 · 진선미 · 박남춘 · 최원식 · 오제세 · 이학영 · 김관영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

(2015. 2. 6 이명수 · 황인자 · 정희수 · 김제식 · 김을동 · 홍지만 · 신경림 · 김정록 · 문정림 · 박윤옥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 발의)

(2015. 2. 4 김광진 · 강동원 · 김승남 · 박광은 · 원혜영 · 유대운 · 이개호 · 전병헌 · 정청래 · 황주홍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 발의)

(2015. 2. 3 김성주 · 박홍근 · 김용익 · 장하나 ·

박혜자 · 남인순 · 윤관석 · 진선미 · 최동익 · 양승조 · 오제세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 발의)

(2015. 1. 19 류지영 · 송영근 · 유의동 · 양창영 · 이재영 · 김명연 · 민병주 · 이우현 · 서상기 · 정병국 · 권성동 · 서용교 · 송광호 · 김재경 · 박민식 · 강은희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 발의)

(2015. 1. 16 박인숙 · 민병주 · 한선교 · 주호영 · 박명재 · 김종태 · 김대환 · 염동열 · 이완영 · 김명연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 10. 22 정부 제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 의원 대표발의)

(2014. 12. 15 김용익 · 이미경 · 강기정 · 이종걸 · 박주선 · 오영식 · 김성주 · 이목희 · 이학영 · 최동익 의원 발의)

(이상 2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3건 보건복지위원장 보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0 이명수 · 김동완 · 김을동 · 李宰榮 · 정희수 · 문정림 · 강석호 · 조명철 · 이완구 · 이노근 의원 발의)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

(2013. 3. 20 이명수 · 김광진 · 김을동 · 정희수 · 강기윤 · 박인숙 · 이상일 · 조현룡 · 이재영 · 문정림 의원 발의)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 발의)

(2014. 1. 28 김성태 · 최봉홍 · 주영순 · 서용교 · 권성동 · 김상민 · 김기선 · 김용태 · 김무성 · 이종훈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이상 3건 환경노동위원장 보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 의원 대표발의)

(2014. 2. 3 이자스민 · 이만우 · 이낙연 · 김우남 · 이주영 · 윤명희 · 심재권 · 조원진 · 박인숙 · 민병주 의원 발의)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

(2014. 5. 2 박윤옥 · 이만우 · 정성호 · 서청원 · 최봉홍 · 서용교 · 박인숙 · 정의화 · 주영순 · 조명철 · 심윤조 · 정우택 · 황인자 · 한기호 · 민현주 · 이운룡 · 염동열 · 이학재 · 신경림 · 김정록 · 신의진 · 이철우 · 안효대 · 문대성 · 정문헌 · 김영우 · 안덕수 의원 발의)

(이상 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건 여성가족위원장 보고

**○보고서 제출**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2015년~2019년)**

(2015. 3. 2 정부 제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송부하겠음